박사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2024. 9. 13.(금)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데이터의 기술(記述) 형식을 중심으로 —

인문정보학 전공
서 동 신

목 차

Ⅰ. 서론 ····· 3
1. 연구의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9
3. 연구 방법과 범위 ····· 16
Ⅱ.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토대 ····· 21
1. 데이터 표준화, 그 오해 ····· 21
1) 데이터의 내포 ····· 21
2) 데이터 고르기 ····· 22
2. 데이터 기술(記述) 형식과 한국학 ····· 24
1) 데이터의 기술 형식 ····· 24
2) 한국학 정보화의 터 고르기 ····· 26
Ⅲ.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지형도 ····· 29
1. 공공데이터 진영의 적극적 역할 ····· 29
1) 공공데이터 논의를 위한 솎아 내기 ····· 30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35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 41

2. 통합플랫폼 진영의 온정적 역할 ····· 44
1) 통합플랫폼 논의를 위한 이랑짓기 ····· 44
2)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 49
3)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 51
Ⅳ.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 54
1.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 방안 ····· 54
1) DB표준-기관표준-공통표준 수립 ····· 54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보완 ····· 56
3) 범정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및 기타 고려사항 ····· 57
2. 데이터 기술 형식의 지능화 전략 ····· 58
1)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마스터데이터 관리 ····· 60
2) 시맨틱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계 ····· 61
3) 메타버스와 한국학 콘텐츠 ····· 62
Ⅴ. 맺음말 ····· 63
참고문헌 ····· 65
Abstract ····· 78
부 록 ····· 79
1. 공통표준용어 목록 예시 ····· 79
2. 공통표준단어 목록 예시 ····· 99
3.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전체) ····· 108
4.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 요약 ····· 123
5.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예시 ····· 140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한국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및 창의적 저작 활동의 기반 요소인 한국학 데이터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그리고 한국학[2]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데이터의 기술(記述) 형식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는 이 시대 인문학 연구·향유의 환경에 맞게 전 세계적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별**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 연구 동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기존 학문 분야의 데이터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3] 기술 형식에 대한 데팍토 표준의

---

1)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 호흡으로 수행 중인 필자의 연구는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을 시론으로 공개한 바 있으며, 이 시론은 본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밑바탕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 시론은 학술지 논문의 분량상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대한 전제(前提)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시론 발표 당시 분량상의 한계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내용과 더불어, 공공데이터 정책을 비롯하여 시론 발표 이후 변경된 최신 사항과 후속 보완된 필자의 견해까지 함께 반영된다. 서동신,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 『한국학』 제175호, 2024a, 205~241쪽. 참고로, 필자는 2020년 초에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관련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2) '한국학'이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한국인이 세계와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룩한 성취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 소개'(https://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5010110000&lang=kor, 2023.10.23.) 참조. '한국학'의 개념과 성립에 관하여 최근까지 진행된 구체적 논의는 황원구·정구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학(國學)'(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552, 2023.10.23.); 전훈지, 「한국학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고찰 : 김경일 저,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역사의 시각』의 서평」, 『비교한국학』, 제29권 제2호, 2021, 87~124쪽; 오영교, 「한국학·지역학의 발흥과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 제200권, 2023, 1~34쪽 및 이 자료들 속의 참고문헌을 넝쿨 캐듯 하여 확인 가능하다.

3)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는 시맨틱 데이터를 비롯하여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 영역까지 포괄하는 기술 로드맵과 함께 사용될 지능화된 한국학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서동신, 앞의 논문(2024a), 236쪽.

유도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4)]

아울러 통상적으로 일컫는 '데이터 표준화'라는 표현은 학술적 내포가 특히 중요한 인문학자들에게 오해와 왜곡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에[47)] 본고에서는 필요 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것이며, 이러한 용어 사용상의 관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여타 학계와 업계에 공유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Ⅱ장에서 구체적으로 논구된다.

인문학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이나 그 데이터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위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면,[5)]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미제(謎題)로 남을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6)] 분야에서의 정보화 사업은 아날로그 형태의 인문학 데

---

4) 기본적인 표준의 유형은 각종 표준화 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 데유레 표준) 및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표준처럼 인정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s, 데팍토 표준)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 외에도 제품표준·비제품표준, 공개표준·사적소유표준, 자생적 표준·의도적 표준, 규제적 표준·비규제적 표준 등으로도 구분되고,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표준·국제표준 및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논지상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성태경, 『표준의 경제학 : 이론·사례·정책』, 한국학술정보, 2012, 14 · 25 · 30~32쪽; 이강원·손호웅,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구미서관, 2016, 네이버 지식백과('Standard',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8439&docId=3482948&categoryId=5843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국가표준기본법, 2024.1.1.) 참조.

5)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인문학 분야의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뜻하는 내포는 제Ⅱ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6) 인문학 연구에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특성화하려는 시도는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집약한 'digital humanities'(디지털 인문학)라는 표현은 2004년 영국에서 처음 공식 소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Susan Schreibman, Ray Siemens, John Unsworth (ed.), *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 Oxford: Blackwell, 2004(https://companions.digitalhumanities.org/DH, 2024.06.15.); Johanna Drucker, "Philosophy and Digital Humanities: A review of Willard McCarty, *Humanities Computing* (London and NY: Palgrave, 2005)," *Digital Humanities Quarterly*, Vol. 1, No. 1, the Association for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ACH) and the Alliance of Digital Humanities Organizations (ADHO), 2007(https://www.digitalhumanities.org/dhq/vol/1/1/000001/000001.html, 2024.06.15.). 구체적인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즉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인문학 데이터는 지능화[7]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지능화는 동시 기획ㆍ병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문학 정보화[8] 사업을 수행하는 IT 기술자들에게는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되도록 인도할 인문학자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술적 식견이 높은 인문학자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9] 현실의

있다.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17~23쪽. 아울러 필자는 디지털 인문학을 “인문학 연구·교육·창작 활동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특성화하는 인문학 수행 방법”이라고 짧게 정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단상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서동신,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를 위한 시스템 환경」, 『석당논총』, 제89집, 2024b, 196쪽.

7) 여기서의 ‘지능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지능정보화’, 곧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과 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말하는 ‘지능정보기술’이란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의 기술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결합 및 활용된 기술을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18298,20210720), 2024.06.15.) 참조.

8) 인문학 정보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정보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2001년 공식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그 내포(內包)의 진화 과정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김현, 「인문정보학에 관한 구상 : 정보 기술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 『民族文化硏究』 제35호, 2001, 14쪽; 김현, “‘인문정보학’에 대한 정의”, 인문정보학 개론 2024(https://dh.aks.ac.kr/Edu/wiki/index.php/인문정보학_개론_2024,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위키, 2024.04.11.).

9) 김현, 「한국학과 뉴미디어의 접목을 위한 실험」(1998. 1.), 앞의 책, 15~20쪽; 김현,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과제」(1998. 4.), 앞의 책, 271~273쪽; 김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학 연구 추진 방향」,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35~37쪽; 김현, 「역사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과제」(2003. 7.), 앞의 책, 317~319쪽; 김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75~92쪽.

학계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인정하듯 이는 적잖은 부담과 희생을 감내해야 할 도전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목전(目前)의 과제가 되었다. 이미 '법'으로 규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10] '표준화'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민감한 인문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에게도 혁신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와 맹점을 안고 있다.[11] 실상이 그러한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앞세우는[12] 대한민국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적 체계와 추세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함과 동시에 한국학 본연의 데이터 특성을 보존·계발할 방안을 모색한다. 그럼 일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부문의 조사 대상 34개국 중 1위에 랭크됨으로써 2015년 이래 3회 연속 세계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지만, 기실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각종 기관 업무와 시스템에서 기술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

10) 여기서 '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11) 기실 표준화라는 개념은 태생 자체가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태경, 앞의 책, 17~18 · 33~34 · 37~39 · 47~48 · 231~232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가이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244~246쪽. 한편 표준화에 대해서는 '동일성으로의 환원'과 이에 대한 논박을 비롯한 철학적 담론 및 이해관계의 충돌과 호혜 · 협동을 포괄하는 사회학적 담론 등 다양한 관점의 성찰이 필요하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표준화 자체가 갖는 맹점, 즉 혁신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데이터 표준화의 딜레마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다음의 논고들에서 볼 수 있다. Yoshiaki Fukami, "Standardization Procedure for Data Exchange," *Information*, Vol. 11, Issue 6, 2020, pp. 342;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Data Standardiza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94, Issue 4, 2019, pp. 751~761.

12) 「대한민국헌법」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1988.02.25. 시행)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과 공유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3] 구체적으로 보자면 데이터의 오류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정보의 소실, 데이터의 중복 및 조직·업무·시스템별 데이터 불일치, 데이터에 대한 의미 파악의 지연으로 인한 정보 제공 적시성의 손실, 데이터 통합에서의 장애, 정보시스템 변경과 유지보수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꼽히는 것이다.[14]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대 축이 되어 '법'으로써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가 포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과[15] 시행령·시행규칙 및 유관 행정규칙,[16]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지식정보법)과[17] 시행

---

13) 조윤휘·이용건, 「공공데이터 주요 성과와 제4차('23~'25) 기본계획 추진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2호, 2022, 798쪽; 행정안전부(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c, 2·6~7·30~31쪽; 김은진·김민수·김희웅,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연구」, 『지식경영연구』 20권 4호, 2019, 24쪽 참조.

1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가이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244~245쪽 참조. 일찍부터 인문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의 글도 참고할 수 있다. 김현,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과제」(1998. 4. 16.),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271~273쪽.

15)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7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해 10월 31일 자로 동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2023년 5월 16일에 5번째 개정 후 동년 11월 17일 자로 시행되었다. 현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023.11.17. 시행) 참조.

16) 「공공데이터법」 유관 행정규칙으로는 각 공공기관별 규정이나 지침 외에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이 포함된다.

17) 「국가지식정보법」은 2021년 6월 8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해 12월 9일 자로 동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 후 2024년 6월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국가지식정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21.12.09. 시행) 참조.

령 및 유관 행정규칙,[18] 「지능정보화 기본법」과[19]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유관 행정규칙[20] 등을 가리킨다.[21] 이렇게 법으로 규정될 만큼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의무적인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계 분야별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 연구 추세와

---

18)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으로는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다.

19)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1995년 8월 4일에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자로 동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었다가, 33차례의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칭되었다가 2020년 6월 9일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많은 내용이 개정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7월 29일부터 2009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던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2022.07.21. 시행) 참조. 인문학 정보화 연구의 일환인 본고의 입장에서 이 법령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출현하기 전에 일시 존속했던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인문학 정보화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시도한 다음의 연구보고서, 그리고 뒤이어서 이 법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까지 함께 다루며 한국 인문학 정보화를 조망한 다음의 논고를 눈여겨볼 만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후자는 『인문콘텐츠』 창간호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의를 더한다. 이남희·김석근, 『지식정보화 관련 법령 분석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인문사회연구회, 2002; 이남희, 「인문학과 지식정보화 :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b, 117~130쪽.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유관 행정규칙으로는 「국가DB사업 관리지침」,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등이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유관 행정규칙 중 앞의 법 유관 행정규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있다.

21) 이 외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에서 총괄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유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과 시행령 및 유관 행정규칙, 그리고 최근(2023년 9월 14일) 신규 제정되고 2024년 9월 15일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주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등은 부가적 요소로만 감안하기로 한다. 단,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행정규칙에 속하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은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 기반으로 감안될 사항이다.

궤를 같이한다.[22]

법에서 규정한 것은 공공 부문의 데이터에 대한 것이지만, 민간 부문의 데이터라고 해서 예외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학술·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시하여 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 및 관리를 비중 있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본 연구에서의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를 위한 지형도 상정과 그것의 유효성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 양상은 제Ⅲ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앞 절에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인 단계가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법에 의해 의무로 규정하는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별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 연구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고 하였다.[23] 이처럼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강

22) 해외의 몇몇 대표적 사례가 제2절(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된다.

23) 다음 논고들은 각각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각계 분야별로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논의들의 예이다. 여기서 한국학 분야의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방안 도출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본 절의 후반에서 선별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최근 연구 성과들까지 함께 살펴볼 때 절대적인 다수가 의료 관련 부문에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만큼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필요성과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Data Standardiza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94, Issue 4, 2019, pp. 737~770; 潘燕杰, “我国健康医疗数据治理的标准化路径 ——以美国相关法律为借鉴,” *Journal of Nanjing Medical University: Social Sciences*, Issue 5, 2023, pp. 423~429; Yoshiaki Fukami, “Standardization Procedure for Data Exchange,” *Information*, Vol. 11, Issue 6, 2020, pp. 339~349; Antonie Fuhr, Andreas Kurtz, Christian Hiepen, Sabine Müller, “Organoids as Miniature Twins—Challenges for Comparability and Need for Data Standardization and Access,” *Organoids*, Vol. 1, Issue 1, 2022, pp. 28~36; Д. Є. Кадук, Т. М. Александрова, П. С. Талапова, І. Б. Агєєва, М. М. Ведь, М. О. Трофименко, М. Р. Колесник, Т. С. Несміян, “СУЧАСНИЙ СТАН ТА ПЕРСПЕКТИВИ ВПРОВАДЖЕННЯ СТАНДАРТИЗАЦІЇ ДАНИХ У СИСТЕМУ ОХОРОНИ ЗДОРОВ'Я УКРАЇНИ (огляд літератури),” *Medični Perspektivi*, Vol. 28, Issue 3, 2023, pp. 190~198.

력히 요구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각계 분야별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소통의 기반인 한국학[2] 분야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 정책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정보기술 발전 동향에 부합하도록 한국학 본연의 데이터 특성을 보존·계발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한국의 몇몇 분야들이 있고 한국학 관련해서도 필요성의 차원 또는 일부 세부 범주에서는 일찍부터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언급되어 왔지만,[24] 현 시점에서 관련 국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거니와 한국학 분야 전반을 아우

한국의 통상적 언어 환경을 감안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지막 자료는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구현 현황과 전망'을 다룬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연구도 함께 연계하여 참고할 만하다. Hyeonjeong Lee, Hoseok Jung, Miyoung Shin, Ohseok Kwon, "Developing a semi-automatic data conversion tool for Korean ecological data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logy & Environment*, Vol. 41, 2017, pp. 1~7; 이종하・허진철・윤창희, 「차세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Digital Insight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책본부 AI・미래전략센터, 2022.

24) 한국학 분야에서 필요성의 차원 또는 일부 세부 범주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언급된 논의로서 다음 자료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시간순) 다만 데이터 기술 형식의 정형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표준화의 필요성이 핵심에 가까운 이유로 일찍부터 국내외에서 표준화 논의가 일반화된 문헌정보(고문헌 이외)나 지리정보(역사지리 이외) 등의 분야는 굳이 언급하지 않되, 총체적 한국학 데이터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제Ⅳ장에서는 행정 분야 및 이공계 기술표준과 아울러 기반적인 고려사항으로 반영할 것이다. 김현,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과제」(1998. 4. 16.), 앞의 책(2012), 271~273쪽; 안병학·정우봉·정출헌, 「한국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 및 응용 방안 연구」, 『民族文化硏究』 34권, 2001, 179~389쪽; 이남희, 앞의 논문(2003a), 25~50쪽; 김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학 연구 추진 방향」,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35~37쪽; 김현, 「역사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과제」(2003. 7. 11.), 앞의 책(2012), 317~319쪽; 김현,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民族文化硏究』, 제43호, 2005, 9~10・14~17・23~24쪽; 김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 앞의 책(2006), 75~92쪽; 최진옥・양창진, 「향토인물정보의 형식 표준화 및 종합적 연계 활용 방안」, 『인문콘텐츠』, 제9호, 2007, 125~153쪽;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편), 『고전적 DB 표준화 및 공동 활용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오성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의 표준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정호정・최소희, 「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 『영미연구』, 제48권, 2020, 157~190쪽; 류인태, 「인문학이 데이터와 만날 때 : 재현-연결-표준으로서 인문학 데이터의 내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제65집, 2023, 28~33쪽.

르는 총체적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할 과업이지만 아직 명시적인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필자는 본고의 시론으로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25] 다만 이 시론은 학술지 논문의 분량상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대한 전제(前提)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시론 발표 당시 분량상의 한계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내용과 더불어, 공공데이터 정책을 비롯하여 시론 발표 이후 변경된 최신 사항과 후속 보완된 필자의 견해까지 함께 반영된다.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연구는 긴 호흡으로 지속 진행해야 할 장기 과업으로서, 본고의 내용은 앞의 시론에 이어 현 시점에서 논의 가능한 범위로 한정될 것이다.

그럼 앞에서 각주로 언급한 국내외 연구성과들[23)·24)] 중 현 시점에서 한국학 분야 전반의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방안 도출에 비중 있게 참고한 내용을 간추려 보고, 이를 제Ⅳ장 및 기타 부분에서 각 분야의 여타 연구 성과들과 함께 필요에 맞게 활용하기로 한다. 전문적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필자의 견해가 일부 가미되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Ⅳ장 등 뒤이어지는 본고의 해당 내용을 참조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우선(Ⓐ) 『인문정보학의 모색』에 집성된 인문정보학 관련 많은 글 중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에 대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전개된 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6] 컴퓨터가 지식 생산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특정 분야의 자료·기사·문장·전문어휘에 대해 그 성격과 유형

25) 서동신,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 『한국학』 제175호, 2024a, 205~241쪽.

26) 김현,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과제」(1998. 4. 16.), 앞의 책(2012), 271~273쪽; 김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학 연구 추진 방향」,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35~37쪽; 김현, 「역사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과제」(2003. 7. 11.), 앞의 책(2012), 317~319쪽; 김현,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民族文化硏究』, 제43호, 2005, 9~10・14~17・23~24쪽; 김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 앞의 책(2006), 75~92쪽.

을 알게 하는 표준화된 양식의 부가 정보를 기입하여 컴퓨터의 인지 능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조직의 노력을 넘어 관련된 모든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의 규칙 적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국학 지식 정보 자원들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라도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의 전문성과 활용의 보편성을 함께 고려한 표준적인 정보 기술(記述) 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칙의 개별 정보 자원 적용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식정보 서비스의 기반 데이터가 서로 간에 활용되기 용이하도록 하는 체계,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技術)적 요소들은 정보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그것의 활용·응용은 생명과학·우주과학·환경공학 등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인문과학 전공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접목될 정보과학적 기술로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같은 마크업 체계와 그 응용 기술, 유형화 가능한 인문지식 자원의 표준적인 메타데이터 형식 개발, 다종 메타데이터의 상호 연계·공유 기반으로서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구축 기술(ISO/IEC11179 표준안), 분야별 지식 요소들을 명시적 관계의 형식으로 명세화하는 온톨로지(ontology) 관련 기술 등이다. 이러한 과업은 인문학과 정보과학 양 분야 모두에 전문적 경험을 가진 다수의 연구자들이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해야만 달성 가능하다.

Ⓐ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약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유효한 내용이 다수이다. 그만큼 선구적인 탁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달성하기가 어려운 과업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24년이라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수행 인력과 프로젝트 수요가 무척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서 요망하는 수준만큼의 실질적인 유효 인력은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점에 이 과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른 다방면의 인프라 조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7] 본고에서는 Ⓐ를 기반 지침으로 삼되 현 시점에

서의 정부 정책 및 관련 시스템 인프라와 함께 최신성을 갖춘 세계적 표준안과 글로벌 시스템 인프라까지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한편(Ⓑ) "Data Standardization"(2019)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이식용이성(portability)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기술적 장애물(메타데이터의 불확실성, 데이터 전송상의 장애물, 데이터의 누락)을 거론한 후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의 표준화를 통해 이러한 장애물 중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계 학습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설명한다.[28] 데이터 표준화의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효과까지 함께 논한다.[11] 그리고 시장이 이끄는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의 주도적 입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과 정부가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를 활성화시킬 때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데,[29] 정부 당국은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 관련 시장 상황과 특성 및 이에 기반한 이득과 비용을 연구하되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 분석의 수행과 전문가 자문의 수용까지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서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 수립 기구의 설립과 활성화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한다.

Ⓑ에서 이루어진 논의 중 본고에 반영되거나 필자의 착안에 참고가 된 세 가지 사항을 특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 활용성의 촉진과 제고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식용이성과 상호운용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적 갈래를 적용하여 구분 논의한 점이다.[30] 이는 본고의 제Ⅲ장 1절 1), 즉 국내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솎아 내기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측면과 공공데이터 관리 측면의 기반 요청사항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핵심적 개념이 된다. 전자에서는 이식용이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가 기반 요청사항

27) 제Ⅲ장 1절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28)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op. cit.*, pp. 747~749.
29) *Ibid.*, pp. 761~769.
30) *Ibid.*, pp. 739~740.

이 되고, 후자에서는 상호운용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가 기반 요청사항이 되는 것이다.[31] 그리고 이는 공공데이터 정책상 양대 표준의 부류인 '제공표준' 부류와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가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시장이 이끄는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의 주도적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입각하여 정부가 데이터 기술·교환 형식 표준화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들 수 있다.[32] 이는 본고의 제Ⅲ장, 즉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지형도를 도출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위 논고에서 일컫는 정부의 역할은 본고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상의 적극적 역할에 배당하고, 시장의 역할은 통합플랫폼이 수행할 온정적 역할에 오버랩(overlap)시켜서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33]

세 번째 사항으로 Ⓑ의 도입부에서 언급되는 시맨틱웹(semantic web)[34]

---

31) 2024년 6월 하순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의해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의 실시 및 교재 배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공데이터의 표준에 대한 이와 같은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위 논문의 서술에서 사용된 이분화 개념 체계는 필자의 시론(2024a) 저술 중에 서 말의 구슬을 꿰는 벼리가 될 수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나 교재에서는 아직 이식용이성과 상호운용성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의 양 갈래를 구분하는 기준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2)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op. cit.*, pp. 739~740.

33)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통합플랫폼'이 의미하는 바는 뒤이어지는 3절 참조.

34) 시맨틱웹이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이용자가 제시한 특정 질의어를 포함하는 수준의 정보들을 나열해 주고 그 속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의도한 바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선별 선택하도록 하는 식의 소극적 문답과 정보처리가 아니라, 정제된 지식을 기반으로 집성되어 있는 각 지식 개체들의 의미관계를 반영하여 적확(的確)한 결과를 제시하는 식의 명시적(explicit) 문답과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지능형 웹 개념이다. 처음 이 용어를 만든 팀 버너스리(Timothy John Berners-Lee, 1955~)의 저작들 속에 나타난 시맨틱웹의 구상과 설명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Tim Berners-Lee, Mark Fischetti, *Weaving the Web : the original design and ultimate destiny of the World Wide Web by its inventor*,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9, pp. 157~158; Tim Berners-Lee, James Hendler, Ora Lassila, "The Semantic Web," *Scientific American*, Vol. 284, No. 5, 2001, pp. 1~4·7·10·14·16~17. 한편 W3C에서 제시하는 시맨틱웹 표준 관련 기술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3C Semantic Web Standards(https://www.w3.org/2001/sw/wiki).

관련한 내용을 거론할 수 있다. 팀 버너스리에 의해 창안된 시맨틱웹 자체는 실패한 구상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관련 표준의 수립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구상이라는 것이다.[35] 이는 본고에서[36]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안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구상 대상 중 하나인 시맨틱 데이터에 관한 입장에 해당하며,[3] 이 점에서 위 논고는 본고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론할 연구성과인(Ⓒ) “Standardization Procedure for Data Exchange”(2020)에서는[37] 데이터의 공통 사양이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지만 표준화 자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W3C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 과정 관리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제안함으로써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적 구조 대신 기능에 따른 개발 사양의 범위 정의, 사양 고정 후 구현 사례 제공 방식이 아닌 선(先)구현과 피드백 후 사양 안정화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합의 형성과 표준 확산을 촉진하는 개방형 표준화 프로세스, 제안 사양의 구현과 업데이트 촉진을 위한 로열티 무료 정책 등이 그것이다.[38]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에도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는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기반인 데이터 교환 층위에서 국제적인 표준화 절차를 취급하고 있다. 다만 표준화의 대상이 데이터 기술(記述) 형식만이 아니라 데이터 교환을 구현하는 기술(技術) 사양까지 포괄하되, 실질적인 논점은 구현 기술 사양에 있다. 이는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를 논하되 데이터 교환 관련 구현 기술 자체의 표준화에는 비중이 적은 본고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3C라는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의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표준화 절차와 관리 및 그 개선과정의 일면을 구체적인 실질 사례를 통해 들

35)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op. cit.*, pp. 738.
36) 엄밀하게는 필자의 시론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서동신, 앞의 논문(2024a), 236쪽 참조.
37) Yoshiaki Fukami, *op. cit.*, pp. 339~349.
38) *Ibid.*, pp. 343~345.

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안 유도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3] 데이터 교환 구현 기술 자체의 고도성과 적실성만이 아니라 해당 방면의 표준화 동향과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 관계를 폭넓게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는 통찰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 더 나아가 Ⓐ에서 거론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기술(ISO/IEC11179 표준안)과 함께 제Ⅳ장에서 검토할 표준으로 데이터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W3C의 핵심 표준인 데이터 카탈로그 용어(DCAT: Data Catalogue Vocabulary)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이 논문에서 다루는 활용성 제고 및 표준화 연구의 대상은 한국학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및 그것의 기술 형식이며, 이 데이터 기술 형식에 대한 표준화 수행의 범위는 필자가 상정한 지형도, 즉 '통합플랫폼과 공공데이터의 상보적 역할'에 의거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측면과 통합플랫폼 운영의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영역까지로 한다.[39]

여기서의 '통합플랫폼'은 여러 곳에서 '통합플랫폼'이라는 명명하에 제작된 모든 서비스 채널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과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것이다. 현 집필 시점까지는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상정 가능한 범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언급하는 '통합플랫폼'의 개념적 범위를 이렇게 상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정책과 통합플랫폼 운영에 대한 더 구체적 서술 및 그 상호 간의 지형도는 제Ⅲ장에서 다루어진다.

한편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인문학에서의 특성 및 그 주변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40]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좁은 의미의 인문학, 즉 자연

39) 이는 '표준화 수행'의 범위를 말하며,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의 기술 형식에 대한 '표준화안의 유도 전략 구상' 즉 지능화 전략과는 별개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도 구분이 되는 인문학을 일차적으로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에 20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디지털 인문학도 포함한다.

전통적 인문학에서의 방법론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분(①), 방법론적 일원론과 다원론 간의 논쟁(②), 설명과 이해의 차이(③), 비판적 사고(④) 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40] ①의 관점에서는 자연과학이 보편성에 비중을 두는 것에 반해 인문학은 특수성에 두는 비중이 높은 연구라고 본다. 그리고 ②의 관점에서는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학까지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법칙화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과 이에 반대하는 방법론적 다원론이 입장을 달리하는 와중에 이들 각각에 기반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③의 관점에서는 자연과학의 인과론적 설명 방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문학의 목적론적 이해 방법도 있음이 강조된다. ④의 관점에서는 과학주의적 학문관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1930년대 이래의 비판이론 및 구성주의와 연계되어 포괄적 학문 방법론의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가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의 논증을 통해 이루어진다.[41]

---

40)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후 오늘날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과 대비하여 그 이전의 인문학 방법을 일컫기 위해 편의상 '전통적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디지털'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아날로그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의 인문학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인문학'이라고 하지 않았다. '디지털'이 연구 방법에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작용할 경우에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하의 전통적 인문학 연구 방법론 관련 내용은 장재덕・안건훈, 「인문학에서의 방법론」, 『江原人文論叢』, 제8권, 2000, 367~368 · 373~383쪽을 주요하게 참조하되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였고, 이 중 비판적 사고(이하 출현 ④) 관련해서는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현실사, 2007 쇄신판, 7 · 24~27쪽의 관점을 가미하였다. 방법론 측면의 디지털 인문학과 그 계층적 분류 체계는 서동신, 앞의 논문(2024a), 215~216쪽; 서동신, 앞의 논문(2024b), 196~197쪽을 활용・보완하였다.

41) 탐구를 위해 필수적 도구인 '비판적 사고'는 "주관적 판단을 유아론적 밀실로부터 열린 사고 공동체의 광장으로 끌어내어 '객관적으로' 검토받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판단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고"이다. 이는 철학자, 교육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 등 46명의 비판적 사고 전문가들을 미국철학회가 위촉 후 2년여 기간의 연구를 거쳐 도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핵심이다. 논리학이 형식을 다루는 데 반해 비판적 사고는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서는 연역논증, 귀납논증, 유비논증, 가설논증 등이 이용된다. 김광수, 앞의 책, 7・16~17・24~27쪽 참조.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디지털 인문학은 그 자체가 방법론에 입각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방법론 관점에서의 의미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나 교육 또는 창작의 방법상 ‘디지털’이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작용하는 인문학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40)·6)]

‘인문학 수행 방법’[6)]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은 그 수행 대상과 방법의 계층적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및 체계화’(①)와 ‘콘텐츠 큐레이션’(②)이라는 2가지 층위로 분류할 수 있다.[42)] ②에서의 ‘큐레이션’(curation)은 어원상 프랑스어 ‘curacion’의 차용어 또는 라틴어 ‘cūrātiō’의 차용어로 간주되는데 그 본래 의미인 치료·돌봄·관심·책임·관리 및 그러한 역할의 직위 등으로부터 파생되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선별 수집과 전시품 관리 및 전시 기획과 관련된 의미로 20세기 후반부터 용례가 보인다.[43)] 이와의 연장선에서 ‘콘텐츠 큐레이션’은 박물관 전시를 기획하고 구현하듯이 컴퓨터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이다.[44)] 그리고 그에 비해

---

42) 이러한 계층적 분류는 연구, 교육, 창작 등 모든 디지털 인문학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계층적 구분법이 일반적인 개념화 방법으로 자리 잡아 온 지 오래다. 3계층 아키텍처, OSI 7계층 모델, 시맨틱 웹의 기술 계층 구조 등은 그 예이다. 한국학 정보화를 구분하는 데에는 데이터 계층과 프리젠테이션 계층 및 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이루어진 3계층 아키텍처가 응용되었다. 추가로 참고할 만한 설명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신, 앞의 논문(2024a), 215~216쪽; 서동신, 앞의 논문(2024b), 196~197쪽.

43) 다수의 의미 중 ‘콘텐츠 큐레이션’과 연관된 측면이 이러하다. Oxford University Press, “curation, n.” *Oxford English Dictionary*(July 2023, https://doi.org/10.1093/OED/9213676740) 참조.

44) 더불어 참고할 만한 개념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이 있다. 이는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83647, 2024.07.26.)이 정의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추천해 주는 일”과는 다른 차원에서 상정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인문학 수행 방법으로서의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원어민이 디지털 데이터의 세계에서 지식의 자원을 탐구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이들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고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결과물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환경이 되어 후속 디지털 아카이브가 산출되는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 :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개론” 강의자료(http://d

①은 보다 기반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인문학 수행 방법으로서 ②와는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②의 일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본고는 ①의 층위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우선시되는[14]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및 체계화'를 연구한다.

앞서 서술한 전통적 인문학에서의 방법론까지 감안하여[40] 본고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정(比定)을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대상인 한국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지만,[2]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를 연구하는 본고는 전통적 인문학 및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포괄적 학문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서술이 전개된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표준화가 이루어진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특수성의 비중이 높은 인문학 포함 한국학의 데이터를 정보기술이라는 자연과학(공학)적 보편성의 기반에서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대비 측면에서 양적 연구 대상으로서 각각 고유의 디지털 값과 형식으로 기술된 한국학 데이터로부터 활용성 제고 목적의 가상적 표준화 및 지능화 체계라는 질적 연구 대상을 도출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45]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한국학 데이터의

---

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1・3~8쪽.

45) 고유의 디지털 값과 형식으로 기술된 한국학 데이터로부터 활용성 제고 목적의 가상적 표준화 및 지능화 체계가 도출되는 과정이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이유는 우선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의 방법으로 파악·해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수행하는 필자의 태도(Einstellung)가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질적인 세계와 대상을 분석·해명하는 인문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남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구별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 : Aristoteles, Descartes, Husserl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5권, 2012, 153·166~170·173~178·180~181쪽 참조. 인문학적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문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연구가 정보기술 전문가에게만 맡긴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인문학 전공자의 지식과 사고체계가 정보기술 지식과 함께 동원되고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현, 「한국학과 뉴미디어의 접목을 위한 실험」(1998. 1.), 앞의 책(2012), 15~20쪽; 김현,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과제」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가 기본적으로 목적론적 이해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방법론 관점에서의 의론은 본고의 연구가 '인문학 연구의 성격을 갖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방법에 대한 실용적 관점의 간략한 서술과 함께 각 장별 조감도를 요약 제시하는 것으로 본 절을 매듭짓는다.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방법으로는 조직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및 규격화, 정보 공유를 위해 유지해야 할 공통 데이터 요소 도출, 데이터 요소의 등록·관리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시 승인된 데이터 요소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모두를 개괄하여 한마디로 넓은 의미의 '표준화'라고 집약할 수도 있다.[46] 본고에서는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방안으로서 그 첫 번째 요소인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나머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연계된 체계에서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론을 구성한다.

……

(1998. 4.), 앞의 책(2012), 271~273쪽; 김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학 연구 추진 방향」,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35~37쪽; 김현, 「역사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과제」(2003. 7.), 앞의 책(2012), 317~319쪽; 김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 앞의 책(2006), 75~92쪽.

4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 앞의 책, 244~245쪽 참조.

Ⅱ.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토대

앞서 한국학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에 한국학 데이터의 기술 형식 표준화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학'과 '데이터' 및 그것의 '기술 형식'과 '표준화'에 대한 기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 '데이터'란 무엇인가? '표준'이란 무엇이고, '표준화'란 무엇인가? '표준화'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데이터'의 어떤 측면인가? 그리고 그 '표준화'가 '한국학'과 관련하여 갖는 위상은 어떠한가?

1. 데이터 표준화, 그 오해

1) 데이터의 내포

그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란 무엇인지 살펴보자.[47] 기본적으로 'data'는 '주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라틴어 '*datum*'(*dare*, *data*)의 차용어로서 영어에서 8가지 의미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3가지로 대별해서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48]

정보화의 관점에서 표준화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의미는

47)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이는 그리 사소한 사안이 아니다.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를 너무 좁히면 표준화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고, 너무 넓히면 표준화 추진 자체가 요원한 이상이 되거나 과도한 통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는 논리도 이 대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莊子』 駢拇篇: 鳧脛雖短, 續之則憂. 鶴脛雖長, 斷之則悲. 故性長非所斷, 性短非所續, 無所去憂也. 원전에서의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강수·이권(역), 『장자Ⅱ: 外篇』, 길, 2019, 14~15쪽.

48) Oxford University Press, "Datum, *N.*" *Oxford English Dictionary*(December 2023, https://doi.org/10.1093/OED/7571592234); "Data, *N.*" *Ibid.*(September 2023, https://doi.org/10.1093/OED/799974034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데이터", https://stdict.korean.go.kr); 두산, 『두피디아』("데이터[data]",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5838); 장석권, 『데이터를 철학하다 : 어떻게 데이터는 지혜가 되는가』, 흐름, 2018, 19~23쪽.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이하 ①)이다. 이는 사실상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미 ‘표준화’가 진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의 형태가 이미 세계적 표준에 의한 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컴퓨터라는 기록매체 포함 연산장치가 만들어지기 오래전부터 ‘data’라는 용어는 사용되어 왔다. 이는 아래와 같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이하 ②)와 “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이하 ③)이다. 여기서 이 둘은 재귀적·순환적 인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②는 “어떠한 사실, 개념, 명령 또는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측 결과로 얻은 수치나 정상적인 값 등 실체의 속성을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는 다시 “사물, 현상, 사건, 인간관계 등에 관한 관찰 기록”으로 축약하고 현대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②는 곧 ③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정보·이론을 도출해 내기도 하고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다시 ②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데이터 고르기

데이터 고르기,[49] 즉 데이터와 관련한 표준화 문제가 시대적·지속적 과제가 되는 것은 ①이 ①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본의, 즉 17세기에 이미 출현했던 ②나 ③의 의미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표준’이란 무엇이고, ‘표준화’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학 데이터와 관련하여 표준화를 이야기할 때의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50]에 상응하는 영어 ‘standard’[51]

49) 여기서의 ‘고르기’란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는 의미 모두를 아우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고르다[2]”, https://stdict.korean.go.kr) 참조.

50) 이러한 의미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標準(標准)’은 『荀子』 儒效篇의 “行有防表”에 대하여 楊倞이 “謂有標准也”라고 주해했던 것이나 『文

를 지칭하는 것이다. 서기전 7000년 무렵 이집트에서 원통형의 돌을 무게 측정 단위로 삼았던 것이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준이라는 것은 다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일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관례가 된 것일 수도 있다.[4)]

'표준화'란 표준의 위와 같은 두 가지 양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두 종류의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그 하나는 집단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각종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통 기준 설정 및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과정에 의한 것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지배제품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52)]

그러면 서론 도입부에서 언급한 '데이터 표준화'라는 표현, 즉 '데이터의 표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자.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어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보면 ①의 형태를 띤 ②나 ③의 데이터를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표준화하는 과정, 또는 이 데이터가 시장 과정에 의하여 표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②나 ③은 그 본의상 사실이나 정보 또는 자료로서, 가시적인 정형성과 한계성을 갖추지 않은 것들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학 데이터와 관련하여 표준화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選』에 실린 袁宏의 「三國名臣序贊」에서 "器範自然 標准無假"라고 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표준[1]' 「명사」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00503&searchKeywordTo=3, 2024.1.5.);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편), 『한한대사전』 7,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589쪽.

51) 어원 측면에서는 프랑스어 standarde, estandart의 차용어이며 영어에서의 의미는 '단단하게 세워진 기치' 정도로 축약하여 이해할 수 있다. Oxford University Press,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dictionary/standard_n?tab=etymology#20823132, 2024.1.5.)

52) 앞서 언급했던 '공적 표준'은 전자에, '사실상 표준'은 후자에 해당한다. 성태경, 앞의 책, 36쪽 참조.

2. 데이터 기술(記述) 형식과 한국학

1) 데이터의 기술 형식

한국학 데이터와 관련하여 표준화를 이야기하려면 그 대상에 대해 '데이터의 기술(記述) 형식' 같은 식의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시적인 정형성과 한계성을 갖추어 상술한 바와 같은 표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표준화'라는 표현은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 같은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어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보면 ①의 형태를 띤 ②나 ③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형식을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표준화**하는** 과정, 또는 이러한 데이터의 기술 형식이 시장 과정에 의하여 표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논하는 관점에서는 전자가 해당된다. 이유는 다음 절, 즉 한국학 정보화의 관점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를 논하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집단적 합의를 거쳐서 데이터 기술 형식을 표준화하게 되면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이 된다. 그런데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은 2가지 종류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거론된다. 하나는 '제공표준'이라는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종류이다.

두 가지가 모두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공데이터법」 및 행정규칙에서 거론되는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이지만 그 성격은 사뭇 다르다. 각 부류가 의거하는 행정규칙이 다르고, 이 행정규칙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하위의 과를 보면 그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전자는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의거한 부류이고, 후자는 공공데이터**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한 부류이다. 전자는 연역적 개념체계의 소산이고, 후자는 귀납적 개념체계의 소산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내용적 검토는 '공공데이터' 개념의 서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다음 장(Ⅲ-1)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는 후자의 부류에 기반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 간다.

그럼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는 단순한 듯하면서도 막연할 수 있는 개념이 실제 어떠한 행위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훑어본다는 차원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형으로 추려 보겠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외하고 제목 수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항들만을 나열할 것이다.[53]

첫 단계로서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는데, 이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데이터 표준화의 원칙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 요구 사항을 수집한다. 그리고 현행 데이터 표준의 원칙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데이터 표준을 개선할 방안을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 표준의 원칙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할 차례다. 먼저 표준 단어 사전을 정의한다. 표준 도메인 사전도 정의한다. 표준 코드 사전도 정의한다. 그런 후에 표준 용어 사전을 정의한다. 이제는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차례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표준을 검토하는데, 일단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본격적인 표준 검토가 진행되고 그 후에 데이터 표준을 보완 및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데이터 표준을 공표하는데, 일단 전사 데이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을 표준 관리 도구에 등록하여 배포한 후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까지 진행한다. 다음 단계로서 데이터 표준을 관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다음의 과정들로 구성된다. 데이터 표준의 신규 요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표준의 변경이나 삭제 시 표준화 요소 · 데이터 모델 · 데이터베이스 · 프로그램 영향도 분석 절차 및 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 프로세스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 전사 데

5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 앞의 책, 261~294쪽;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2023-18,20230403));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d), 14~164쪽 참조.

이터 관리자 등으로 역할과 담당 업무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열거 서술한 데이터 표준화의 행위집합은 크게 2가지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 수립 단계와 데이터 표준 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표준 관리 도구도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데이터 품질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다음 장(Ⅲ)에서 논의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의 내용까지 어우러지면 감별이 용이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개관적인 '데이터 표준화'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한국학' 및 그것의 정보화 차원에서 데이터 표준화와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겠다.

2) 한국학 정보화의 터 고르기

동아시아 인문학의 한 갈래인 '한국학'에서의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은 인문학 정보화의 일환에서 상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학 정보화를 포함하는 디지털 인문학은 연구 수행의 대상과 방법의 계층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개념화할 수 있다.[42)·6)] 그 중 하나는 '데이터 분석 및 체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 큐레이션'이다. 최근에 진행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대다수가 콘텐츠 큐레이션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성 제고 목적의 표준화를 논하는 본고는 데이터 분석 및 체계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양자가 융합된 경우가 많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적 성격의 연구도 있다.[54)]

54) 디지털 인문학(한국학)의 초기부터 요사이까지 진행된 몇몇 대표적 사례는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18~38쪽; 이남희, 「인문학과 지식정보화 :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2003), 118~120・125~128쪽; 양창진, 「정보화에세이 : 정보통신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그리고 상생(相生)」, 『지역정보화』 51(2008), 118~121쪽; 한국국학진흥원, 〈[2022 전통 기록문화 창작 콘퍼런스] 발표 ② 한국학 자료의 큐레이션과 그 사례 - 양창진 관장(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youtu.be/duiRHQmfjXY?si=2mXaBMPc8UAg05yD); 최정도, 「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 『국어국문학』 201(2022), 35~44쪽; 지동은・SANTOSH KUMAR RANJAN, 「북한과 중국에서 조선어(한국어)정보

계층적 측면에서 데이터 체계화 연구는 콘텐츠 큐레이션 연구를 위시한 상위 계층의 연구를 위한 기반적 층위가 되기에, 이 중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연구는 한국학 정보화의 '터'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앞 절의 '데이터 표준화' 개념 논의 중 남겨진 설명을 이어가 보자.

'데이터의 표준화'는 요컨대 데이터를 집단적 합의에 의해 표준화**하는** 과정, 또는 데이터가 시장과정에 의해 표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적극적 표준화, 후자는 소극적 표준화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를 논할 때에는 전자가 해당된다. 후자가 배제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저변의 사정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 업계와 시장이 주도하는 데이터 표준화를 얼마나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다.[55]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국학이라는 인문학 분야에서 업계와 시장이 주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어색하거니와 표준화에 의한 경쟁 촉진·저해 여부, 기술혁신 위축·촉진 여부, 산출물의 신뢰성 여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56] 이미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재원은 이공계 대비 영세한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정보화를 수행하는 업체와 인력은 인문학과 정보기술 양 방면의 전문성을 겸비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한정적인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정에 의해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된 학제적 성격이 제각각 존중·유지될

화 현황과 과제」, 제51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2023.5.13., 105~120쪽 등을 참고 가능하다.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는 데이터 분석 및 체계화 연구와 콘텐츠 큐레이션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적 성격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시장이 이끄는 표준화의 주도적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부가 데이터 표준화를 활성화시킬 때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식용이성(portabil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측면에 비중을 둔다. Michal S. Gal, Daniel L. Rubinfeld, *op. cit.*, pp. 737~770.

56) 이에 대한 거론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성태경, 앞의 책, 43~54쪽.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이를 더욱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집단적 합의에 의해 표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는 적극적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면 결국 통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구속을 가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표준화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바로 이 조치의 일환이며, 이는 제Ⅲ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아울러 또 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로서 온정적인 지원과 함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제Ⅲ장 2절에서 논한다. 어느 쪽이 되건 이 양자는 모두 한국학 정보화의 터가 되는 데이터를 다지는 작업이 된다.[57]

그리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은 한국학 데이터에 대한 '세계적 표준'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학과 인접한 국내외 학문 영역에서의 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한국학만이 가진 영역에서는 독자적인 표준을 정의해야 한다.

57) 이 양자가 어우러진 방식을 필자는 '상보적 양방 몰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기획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된 바가 없기에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방식은 그저 필자가 현 상태를 관찰하고 정책 및 이론을 분석하면서 방안을 연구하다가 도출된 해석 결과로서의 지형도일 뿐이다.

Ⅲ.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 표준화의 지형도

본고에서 다루는 활용성 제고 및 표준화 연구의 대상은 한국학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수행의 범위는 필자가 상정한 지형도, 즉 '통합플랫폼과 공공데이터의 상보적 역할'에 의거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측면과 통합플랫폼 운영의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영역까지로 한다고 하였다.(제 I 장 3절) 그럼 공공데이터 정책과 통합플랫폼 운영 및 그 상호 간의 지형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공공데이터 진영의 적극적 역할

공공데이터 정책은 매년 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58] 이로 인해 해가 갈수록 인문학 정보화 용역사업의 수행업체들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기준에 따르기 위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요구사항을 이행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59]

'데이터 표준화'만을 보아도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 자료가 다양하며, 어느 하나만을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모두를 함께 병행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데이터 표준화를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비롯하여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메타적 관리 체계까지 함께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야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학이라는 전문 영역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표준화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논점에 필요한 줄기만을 솎아 내어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본고는 적

58) 행정안전부(편),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b), 9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7 · 30~31 · 165쪽; 조윤휘·이용건, 앞의 논문, 801쪽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9) 이는 현재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용역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사업수행업체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문학 정보화 분야에 큰 획을 그어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잖은 의의가 있다.

1) 공공데이터 논의를 위한 솎아 내기

앞 장에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 가지치기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법적인 통제 체계를 언급했다. 이 절에서는 해당 내용을 개괄하여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더 집중적인 논의를 위하여 복잡한 개념과 체계를 다듬고 솎아 내려 한다.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법적인 통제 체계로서 「국가지식정보법」과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공공데이터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인문학법」과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간략하게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데이터 표준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법규는 「공공데이터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다양하게 세분화된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일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0]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60)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의 사이트 참조. 편의와 목적상 본고에서는 법률에서의 정의를 제시하지만, 다음 논고에서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김은진·김민수·김희웅,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연구」, 『지식경영연구』, 20권 4호 (2019), 24쪽.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는 현업에서 크게 공공데이터 활용과 공공데이터 관리의 두 갈래로 나뉘어서 처리되는데, 전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공개·개방 관련 영역이고[61] 후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품질관리 영역으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62]

데이터 표준화는 상술한 공공데이터의 양 측면 모두에서 핵심적 기반이 된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는 이식용이성(portability)을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가 기반적 역할을 하고, 공공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63]

앞(제Ⅱ장 1절)에서 '표준'과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표준화'

61) 이용자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과 사례들을 소개한 논고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바로, 「<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7집(2022), 167~192쪽. 아울러 2022년에 보고된 공공데이터 '추진 실적 - 활용' 부문에서 전 분야 중 가장 많이 활용한 데이터(파일 부문)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월고집(月皐集)』'이 1위를 차지하였고 역시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원문'이 5위를 차지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참고로 2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 정보', 3위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전국 종량제 봉투가격표준데이터', 4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였다. 조윤휘·이용건, 앞의 논문, 795쪽 참조.

62) 현업의 담당자나 관리자 중에서는 후자에 '데이터기반행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은 사실상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양자의 점검·평가 시의 기준에 공통사항이 많기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함께 관여하고 2024년부터는 평가편람도 통합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는 태생 목적부터도 다르다.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참조.

63)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리라는 양 측면에서 표준화가 요구되는 양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진·김민수·김희웅,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연구」, 『지식경영연구』, 20권 4호(2019), 24 · 33쪽; 조윤휘·이용건, 「공공데이터 주요 성과와 제4차('23~'25) 기본계획 추진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2호(2022), 793~794 · 798 · 800~801쪽.

를 다루었다. 그리고 '표준 데이터'의 2가지 부류를 구분하면서 그 내용적 검토를 보류한 바 있다. 이제 그것을 이어갈 차례다.

'제공표준'이라는 부류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표준 데이터이고,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는 공공데이터 관리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표준 데이터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공표준'은 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에 적용해야 하는 표준으로서 공공데이터 포털(그림 1)에 공개된다. 이렇게 작성된 표준 데이터는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 서비스' 및 목록등록관리시스템(그림 2)을 통해 정책적으로 관리된다.[64]

다음으로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는 공공데이터베이스("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으로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적으로 관리된다. '공통표준'은 공통표준용어 · 공통표준단어 ·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한 것이고, '기관표준'은 기관표준용어 · 기관표준단어 · 기관표준도메인 ·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으로서 각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된다. 'DB표준'은 DB표준용어 · DB표준단어 · DB표준도메인 · DB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으로서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개별 DB 구축 · 운영 시 정해진다.[65]

---

64)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6 · 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데이터관리지침/(2021-70,20211026)) 참조. 이 지침에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은 '데이터셋'으로 약칭되는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으로 데이터셋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제공표준'은 과거에 '개방표준'으로 칭해졌었다.

65)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 · 4 · 5 · 9조 참조.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 운영하는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기관별로 구축 · 운영되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그림 1 공공데이터 포털 메인화면(2023.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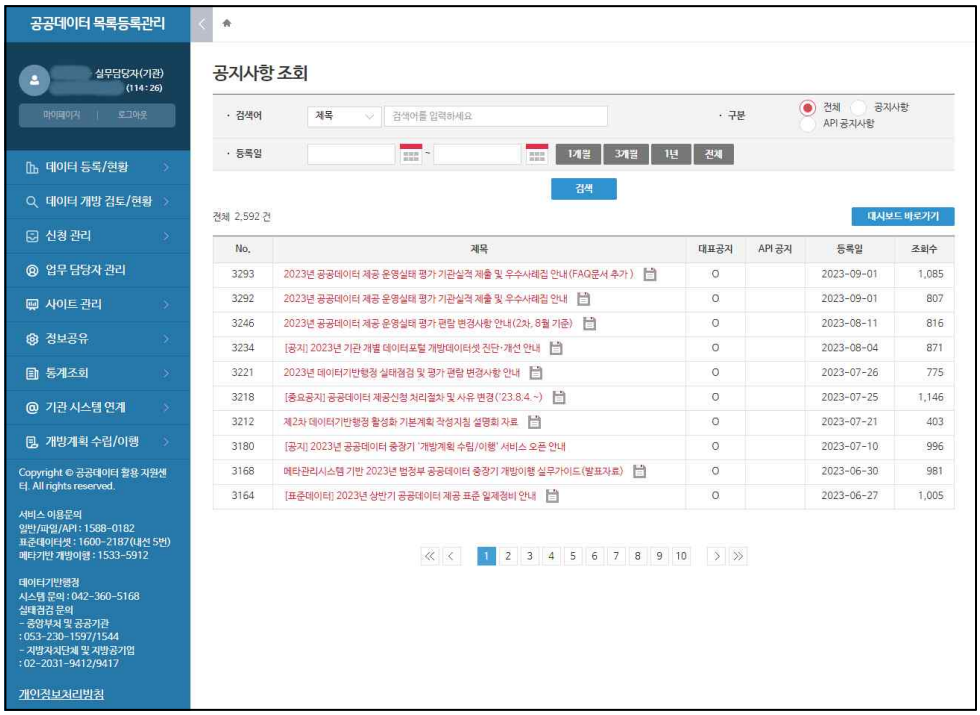

그림 2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메인화면(2023.12.18.)

앞(제Ⅱ장 1절)에서 언급하기를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는 후자, 즉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2023년 10월에 개정된 제17차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내역을 볼 때 총 203개 표준데이터셋 중 통상적인 관점에서 한국학과 관련지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9개(4.4%)를 찾을 수 있다.[66] 해당 표준데이터셋 명칭은 법정구역(읍면동)정보, GIS건물통합정보, 산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지역특화거리, 박물관미술관정보, 관광지정보, 향토문화유적, 도서관 도서 등이다. 이 정도를 갖고서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한국학 분야의 표준 데이터 현황을 논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67] 이에 본고

66) 구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내역은 행정안전부(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d 참조.

67) "한국의 전통문화 속의 역사적 사실 관계 및 그 사실의 문헌적 근거에 관한 지식을 데이터화 하기 위해 개발한 온톨로지 스키마"인 EKC(Encyves of Korean Culture) 데이터 모델의 최신 버전에서는 Actor · Event · Place · Architecture

에서는 한정된 분량으로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현황을 논하는 대상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는 후자로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는 뒤에 이어질 2)와 3)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에 대한 논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한다. 이 내용에서는 모든 사업 종류와 범위에 공통되는 부분이 핵심이며, 이는 바로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라는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본 절에서 솎아 낸 결과로 남는 논점이 된다.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그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집약하는 논점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는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학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를 다음의 3)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의 1)에서 공공데이터 논의를 위한 솎아 내기를 진행했지만, 실상 이 작업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뿐만 아니라 그 상위 법령인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까지 연계된 편람·매뉴얼 등 다수의 공문서와 두꺼운 책자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이터 표준화 체계 속에서 다시금 핵심을 추려서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현황 파악을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라는 기치 아래에서 추릴 수 있는 핵심사항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Clothing · Food · Object · Record · Work · Concept · Heritage · Multimedia · WebResource · Bibliography · Text · Story · Index 등 17가지의 기본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과 단순 비교만 해 보아도 현재의 제공표준이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를 논하기에 많이 아쉬운 수준임을 볼 수 있다. EKC 데이터 모델은 2016년 처음 제정된 후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첫 제정 당시 필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Ontology:EKC 2022〉(https://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 참조.

·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

· 공통표준 필수 관리항목

· 행정표준코드

앞에서 '공통표준'-'기관표준'-'DB표준' 유형으로 구성되는 부류를 거론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가장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별표 제1호]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표 1)이다.

표 1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용어	표준용어명	○ 엔터티, 속성 등 데이터 요소의 명명에 사용될 용어를 기재 - 동음이의어와 약어는 중복을 허용하나 사용 또는 작성을 최소화 ○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 불가 - 숫자의 사용은 가능하나, 표준용어의 직관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최소화 ○ 관용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문약어에 한하여 표준용어로 사용 가능 (예: URL, IP 등)
	영문명	○ 표준용어의 영문명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Full Name으로 기재 - (예시) 표준용어명 "가공식품"의 경우 영문명은 "PROCESS FOOD"로 기재
	영문약어명	○ 해당 표준용어에 대한 영문약어명을 기재 ○ 대문자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용어구분"이 동의어인 경우 해당 용어의 표준어와 동일한 영문약어를 기재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영문약어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약어명을 정의할 것을 권고 - (예시) 모음을 제외한 자음의 결합으로 영문 약어 작성 (PRICE → PRC) - (예시) 같은 자음이 2개 이상 연속되면 1개만 선택하여 작성 (MAPPING → MPNG)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앞부분만 사용하여 작성 (ADDRESS → ADDR)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여 작성 (예: YARD → YD) - (예시) 용어 영문명이 긴 경우는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사이에 특징있는 자음들을 조합하여 작성 (NETWORK → NW, SOFTWARE → SW, MESSAGE → MSG)
	용어설명	○ 표준용어의 의미나 내용을 상세히 서술 ○ 표준어, 동의어 이외에 금칙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칙어 목록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1개 용어에 대하여 다수의 금칙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항목으로 정의하여 사용 가능 - (예시) '휴대폰'이 표준어로 정의된 경우 '핸드폰', '모바일폰' 등을 금칙어로 규정하여 표준용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도메인명	○ 도메인정의서에 정의된 용어의 경우 해당 도메인명을 기재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12, 여부 : 'Y', 'N'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을 참조
	관리부서명	○ 해당 용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인 부서명을 기재
	표준코드명	○ 해당 용어가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코드명을 기재
	업무분야	○ 해당 테이블의 내용과 관련된 BRM 분류체계를 기재 ○ 해당 용어가 다수의 업무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영역"으로 기재, 그 외에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 1단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기재
표준단어	표준단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한글명을 기재
	단어 영문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전체명(full name)을 기재
	단어 영문약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 약어명을 기재
	단어 설명	○ 표준단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형식단어 여부	○ 해당 표준단어가 도메인 특성을 지닌 형식단어(분류어)인지의 여부를 기재
	도메인 분류명	○ 형식단어(분류어)인 경우 해당되는 표준도메인의 분류명을 기재
	이음동의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이음동의어 목록을 기재 - 이음동의어 :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동일한 단어 (예) 연도/년도, 비율/율 - 이음동의어는 공통표준단어와 한글명 이외에는 동일하여 한글명만 관리
	금칙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금칙어 목록을 기재 - 금칙어 : 사용이 허락되지 않거나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특정시점 이후 사용이 중지된 단어 - (예시) 파일 (표준어) ↔ 화일 (금칙어. 사용×) - 금칙어는 표준단어 정의대상이 아니며 금칙어의 한글명만 관리
표준도메인	표준도메인 그룹명	○ 표준도메인의 상위 구분을 기재 - (예시) 날짜/시간
	도메인 분류명	○ 표준도메인의 세부 구분을 기재 - (예시) 연월
	도메인명	○ 해당 표준도메인명으로 "표준도메인분류명 + 데이터 타입 + 길이(선택)" 형태로 정의 - (예시) 연도C4
	도메인 설명	○ 해당 표준도메인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데이터타입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기재 - (예시) 문자형(CHAR, VARCHAR), 숫자형(NUMERIC), 날짜형(DATETIME)
	데이터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값의 길이, 소수점이 존재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한 길이를 기재 ※ 바이트(Byte) 단위의 길이로 한글은 2바이트 기준
	소수점 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이 가질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최대 자릿수를 기재 (소수 값이 존재하고, 데이터유형이 숫자형일 때만 정의)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저장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표현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 표현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단위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단위를 기재 - (예시) m, kg, 도 등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 ~ 12, 여부 : 'Y', 'N'
표준코드	관리부서명	○ 코드의 생성, 변경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부서정보를 기재
	한글코드명	○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표준코드의 한글명을 기재
	영문코드명	○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표준코드의 영문명을 기재
	코드설명	○ 코드의 적용 범위, 설명, 예외사항 등 코드의 정보를 기재
	데이터타입	○ 코드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기재 - (예시) 문자형(고정길이)은 CHARACTER, CHAR 등으로 기재 - (예시) 숫자형(정수)은 NUMERIC(또는 NUM), DECIMAL(또는 DEC), INTEGER(또는 INT), SMALLINT(또는 SINT) 등으로 기재
	데이터길이	○ 코드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숫자로 표현
	코드값	○ 해당 코드가 가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값의 집합이나 범위를 기재
	코드값 의미	○ 대상 코드값의 의미를 기재 - (예시) 코드명 : 가족관계, 코드값 : 001, 코드값 의미 : 본인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에서는 공통표준, 기관표준, DB표준 모두에 적용되는 관리항목들의 기본 패턴을 보여준다. 개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DB표준, 다수의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표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준용하는 공통표준 모두가 이러한 데이터 표준사전의 패턴으로 작성된다.

이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공통표준이고, 공통표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 2번째 핵심사항이 된다. 공통표준은 공통표준단어·공통표준도메인·공통표준용어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다시 다음과 같은 관리항목들로 구성된다.[68]

공통표준단어에는 공통표준단어명·공통표준단어영문약어명·공통표준단어영문명·공통표준단어설명·형식단어여부·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이음동의어목록·금칙어목록 등의 관리항목이 있고, 이들은 모두 필수이다.

공통표준도메인에는 공통표준도메인그룹명·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공통

68)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3호] '공통표준용어 관리항목';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d), 95~98쪽 참조.

표준도메인명 · 공통표준도메인설명 · 데이터타입 · 데이터길이(자릿수) · 소수점길이 · 저장형식 · 표현형식 · 단위 · 허용값 · 행정표준코드명 등의 관리항목이 있고, 이 중 행정표준코드명은 필수가 아니다.

공통표준용어에는 공통표준용어명 · 공통표준용어설명 ·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 공통표준도메인명 · 허용값 · 저장형식 · 표현형식 · 데이터타입 · 데이터길이(자릿수) · 소수점길이 · 단위 · 행정표준코드명 · 소관기관명 · 이음동의어 등의 관리항목이 있고, 이 중 데이터타입 · 데이터길이(자릿수) · 소수점길이 · 단위 · 이음동의어는 필수가 아니다. 즉, 공통표준용어명 · 공통표준용어설명 ·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 공통표준도메인명 · 허용값 · 저장형식 · 표현형식 · 행정표준코드명 · 소관기관명 등이 핵심 항목이 된다.

다만 DB표준이나 기관표준과 달리 공통표준의 경우, '공통코드'라는 구분이 없다. 머리말에서 주석으로 언급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표준코드와 기관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3번째 핵심사항이 되는 것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데이터 표준화는 각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었고 이후로도 데이터 비표준화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10년이 지난 아직도 한국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 대다수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상황은 미흡하기만 하다.[69]

현재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 평가는 사전에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이라는 선제적 품질관리 시책을 펴고 있다.[70] 즉, 2단계에 걸친 진단·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예방적

69)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3. 10. 3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11956,20130730)); 한억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8-5(2018), 78쪽; 한상규·김은진·김희웅, 「공공데이터의 표준 비표준 비교를 통한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5(2019), 63쪽; 조윤휘·이용건, 앞의 논문, 798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d), 2 · 6~7 · 30~31쪽 참조.

70) 예방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구축된 DB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품질 저하 요인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거

품질관리 진단을 수행한 후 그 결과(점수)를 본격적인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의 일부 관련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71] 그리고 2022년부터 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은 4개 검토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데이터 표준'이다. 이 영역의 검토 항목은 2가지인데,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와 '데이터 표준 관리'이다. 전자의 세부 기준으로는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와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가 있고, 후자의 세부 기준으로는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와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가 있다.[72]

이후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은 정보시스템(DB) 구축 계획 수립 단계, 사업 추진(발주) 단계, 사업 완료 단계 등 세 단계에 대해 진단・평가가 이루어진다.[73]

그럼, 다음의 3)에서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사항까지 반영된 총체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의 체계를 핵심적으로 간추리면서 한국학 분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실정을 살펴보도

나 즉각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행정안전부(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9), 10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d), 26쪽 참조.

71) 더 넓게 조망하자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일환이 된다. 운영실태 평가는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아닌 그것들을 운영・관리 주체인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운영실태 평가지표의 5개 영역 중 4번째 영역으로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형태이다. 행정안전부(편),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세종: 행정안전부, 2023b), 6쪽; 행정안전부(편),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4), 38쪽 참조.

72)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75~81쪽 참조.

73)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14~17쪽; 행정안전부(편),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세종: 행정안전부, 2023f), 54~55쪽 참조.

록 하자.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품질진단・개선) 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할 목적으로 700개 기관(2023년 기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조치이다.[74]

평가 대상 기관은 현행화된 보유 DB 중 평가대상이 될 DB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진단・평가를 진행한 후 각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등록한다. 이후 각종 오류를 진단・조치한다. 그러는 중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NIA)에서는 기관별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필요 시 기관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거나 개선 방향을 안내한다. 그러고 나면 수준평가 심의위원회는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심의 후 결과를 확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에도 보고가 된다.[75]

진단・평가항목은 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값 관리라는 2개 영역의 11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영역은 데이터 관리체계 영역이다. 이 영역의 평가지표 6가지 중 데이터 표준화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4번째 평가지표인 ‘데이터 표준 확산’이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는 2가지 세부지표, 즉 ‘데이터 표준 정의’와 ‘데이터 표준 적용율’로 구성된다.[76]

‘데이터 표준 정의’ 지표는 “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상 DB에

74)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b), 2・7쪽.

75)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b), 8~9쪽 참조. 평가대상 DB 선정은 기관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매년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심의・확정 진행 중에 이의신청 접수도 이루어진다.

76)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b), 3~6쪽 참조. 실제 이 자료에서는 3개의 군, 즉 ‘중앙,광역,기초’와 ‘공공기관’ 및 ‘교육청’으로 구분해서 세부사항을 제시하는데, 본고에서는 논지에 맞게 큰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핵심만을 간추려서 서술한다.

대하여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여기에서의 데이터 표준 정의란 앞에서 제시한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을 말한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 적용율' 지표는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상 DB(컬럼)에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여기에서의 적용율은 백분율(%)로 산정된다.[77]

앞서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라는 집약적 핵심사항을 거론했는데, 이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 4가지 중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표준단어의 정의여부는 2022년까지만 해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78]

아직 시작 단계나 다름없는 데이터 표준화의 정책 기조와 현 실정에서, 한국학 데이터 표준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표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기관표준과 DB표준 차원에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지침 수준의 요구사항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부문의 품질관리 평가 수준 및 그 결과, 그리고 실제 정의된 기관표준과 DB표준 내역들을 상세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정리한 내용을 넘어서는 구체적·수치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상 불가하거나 기관 간의 입장 문제로 인하여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도에서 현황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표 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데이터 품질관리 부문)

기관 범위	평균점수 ※ 100점 만점		
	2021년	2022년	2023년[79]
전체 평가대상기관[80]	54.9	61.6	58.1
기타공공기관[81]	**37.4**	**51.9**	**50.4**

77)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17~20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f), 53쪽 참조.

78) 행정안전부(편),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12쪽 참조.

79) 2022년 대비 2023년 점수가 하락한 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DB의 범위가 기관 전체 DB의 40%('22년)에서 50%('23년)로 확대되면서 품질관리 난이도가

위 ‘표 2’는 데이터 표준화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 부문에서 나온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최근 3개년 결과이다.[82] ‘기타공공기관’ 속에는 한국학 관련 몇몇 기관들도 속해 있다. 이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타 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이 된다.

나아가야 할 길이 험난함을 알고 있기에 아직은 다음과 같은 융통성의 여지도 마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적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그리고 이것은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 수준진단·평가를 그런대로 무난히 받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 최선책이다. 실제 최근 수준진단·평가를 높게 받은 기관들의 상당수는 이 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것이라고 안도할 수는 없다.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편),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4), 본문 5쪽 참조.

80) 2023년도에는 69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391, 교육행정 17), 2022년도에는 57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282), 2021년도에는 54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260)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4), 본문 1쪽; 행정안전부(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3a), 본문 1쪽; 행정안전부(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2a), 1쪽 참조.

81) 2023년도에는 391개 공공기관 중 258개가 기타공공기관이고, 2022년도에는 282개 공공기관 중 152개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2021년도에는 260개 공공기관 중 128개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4), 본문 1 · 25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a), 20쪽;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2a), 7쪽 참조.

82)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4), 본문 5쪽 참조.

83)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92쪽 참조. 일례로 앞서 언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DB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 수량에 따라 평가대상 DB를 선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요 몇 해 사이의 추세만 보아도 해가 다르게 정책과 평가의 기조가 엄격해지고 있다.[84] '작년까지는 대략 이 정도로 조치해도 무리 없이 잘 넘어갔는데, 금년에 요구되는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식의 말이 해마다 여기저기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비단 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실무담당자만의 토로가 아니다.[85]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인력들도 각 기관들의 다양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질의에 대처하느라 분투하고 있다.[86] 즉, 위와 같은 전략도 그 융통성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요컨대, 정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드세다. 반면 인문학 연구기관의 의욕은 망연자실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마냥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게 현 상황이다.

다만 이는 전제한 바와 같이 적극성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그렇게 주도적인 과단성을 발휘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통합플랫폼의 온정적 표준화'를 논한다.

2. 통합플랫폼 진영의 온정적 역할

1) 통합플랫폼 논의를 위한 이랑짓기

「공공데이터법」을 비롯한 법적인 통제 체계로 데이터 표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외에 또 다른 편의 적극적인 조치를 상정해 보자. 온정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통합플랫폼'이라는 서비스

84) 앞서 예를 든 평가대상 DB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매년 그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85) 공공데이터 부문에서는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가 서로 다른 층위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 개별 정보시스템의 DB 및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칭하고, 여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모든 정보시스템 DB들을 총괄하여 공공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무담당자'라고 칭한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업무담당자'와 '실무담당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86)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법」 제13조.

체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의 '통합플랫폼'은 여러 곳에서 '통합플랫폼'이라는 명명하에 제작된 모든 서비스 채널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과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 I 장 3절) 서비스가 개시된 순서에 따라 간략히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87]

그림 3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메인화면(2023.12.18.)

87) 이어지는 내용은 데이터 표준화에 기여할 두 통합플랫폼의 존재를 명료하게 드러낸다는 측면 외에도, 최근에 서비스를 개시한 두 통합플랫폼을 함께 소개하고 비교해 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의 전신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 연구기관 자료를 모아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교육부의 지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관으로 구축된 서비스 시스템이다. 2019년 총리실 주재 역사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학 자료 및 연구 성과를 통합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2020년부터 실무협의회와 계획 수립이 시작되었고, 2년여 기간에 걸친 기획과 개발 후 2023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역사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철학·문학·예술·사회과학 등 한국학 전분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지식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해외의 한국학 자료까지 포괄하여 연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연구비가 중단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화 되기 전의 한국학 자료를 인수하여 통합 서비스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서비스 개시 당시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한국국학진흥원·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위시한 21개 기관 29개 DB 연계로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88]

다음으로, 또 하나의 통합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살펴보자.

그림 4 디지털 집현전 메인화면(2023.12.18.)

8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service/kdpInfo) 참조.

디지털집현전은 「국가지식정보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구축된 웹서비스로서, 이 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 ·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인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국가지식정보)“통합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89]

2023년 10~11월경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을 진행하였고, 12월에 베타 테스트를 거친 후 2024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이트들을 연계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당시 105개 연계 사이트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한국학 관련 사이트로 구한국관보,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유산 지식이음,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동북아역사넷, 디지털 장서각,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아카이브 814, 전통문화포털, 표준국어대사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고전종합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e뮤지엄 등등이 있다.[90]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은 상호 연관성이 깊어 보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기획과 구축의 과정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사실상 별개의 조직과 체계로 구축된 서비스 플랫폼들이다.

UI/UX 측면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우선 디지털집현전의 경우 그림 13과 같이 간략한 화면이 인상적이다. 간명한 검색어 입력란 하나, 그리고 배경 정보의 축약적 제시.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사용자 경험상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그냥

89) https://www.law.go.kr/법령/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8197,20210608).

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집현전》(https://k-knowledge.kr/guide/linkSystem.jsp) 참조.

국가지식정보로 지정된 자료에 대해 현재의 구글 기능을 본떠서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각 사이트들을 통합 연계하되, 세부 데이터의 구성과 체계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어떤 세부 DB들이 있는지, 해당 원천 사이트에 있는 하위 DB들 중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제외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는 간명성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정보 구성과 체계를 알고 싶은 이용자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다.

검색 결과에서는 관련 지식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외에 '연관지식'이라는 소메뉴를 통해 해당 항목과 관련된 지식정보가 시각화되어 지식 그래프로 표시되고, 로그인 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이 반영된 추천검색 · 맞춤지식 · 추천설정 · 구독설정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유의미한 서비스 메리트이다.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의 경우, 메인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기본적인 검색창 외에 다양한 서비스 메뉴들과 하위 콘텐츠의 내용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림 12은 첫 서비스 개시 당시의 메인페이지 모습이며 이후로 매년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용도 높은 유사 자료를 특정 주제별로 모아서 지식탐색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화주제서비스, 관리주체 소실 또는 정보화 이전의 한국학 자료·DB를 인수하여 통합 연계 및 개별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독립콘텐츠서비스, 그리고 분야별 동향과 자료의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게시판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검색을 위한 문자 입력기 기능을 통해 한자부수 · 한자음가 · 옛한글 등을 편리하게 활용 · 입력할 수 있다. 연계 기관 · DB 검색을 통해서는 연계 대상 기관의 정보는 물론 하위에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성격과 용도에 맞게 구획된 형태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세한 연계 자료의 현황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정해서 맞춤 검색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디지털집현전은 순전히 메타데이터만을 연계하는 데 비해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은 1차적으로 메타데이터 연계를 추진하

되 추가적으로 원문텍스트까지 검색을 위한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로 회생시키거나 아예 디지털화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한국학 자료를 인수하여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에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서비스함과 동시에 타 연계 데이터베이스들과 함께 검색·연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과 맞물려 학계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강점이 된다.

서비스 연계의 방법 차원에서도 이 두 플랫폼은 확연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집현전의 사이트 연계는 연계 대상 기관이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의 자료 연계는 주관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계 대상 기관으로 요청을 하면서 대상 기관의 편의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을 포함하여, 다음 절에서 살펴볼 각 통합플랫폼의 역할적 특성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그것에 비해 더욱 친화적인 방식으로 대상 기관에게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두 통합플랫폼 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일단 두 통합플랫폼 모두 공공데이터 정책처럼 진단이나 평가 같은 부담스러운 매개 관계로 만나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계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사이트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배려·포용·포섭이라는 묵시적 전략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를 합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통합플랫폼 간의 차이점은 뒤이어지는 데이터 표준화 관점의 논의에서 '온정적 표준화'의 온도 차이를 드러내는 이랑과 고랑이 된다.

2)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2021년 12월 디지털집현전의 근거가 되는「국가지식정보법」및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이후 2년 만인 2023년 12월 21일에「제1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안)('24~'26)」이 국가지식정보위원회에 의해 의결·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검색 지원을 위해 분류체계 및 필수 관리 메타데이터, 연계방식 등에 대한 국가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② 여기서의 필수 관리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표준화란 분야 · 유형 · 제목 · 출처 · 주제어 · 설명 · 발행기관 · 저자 · 날짜 · 언어 · 식별자 등 11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요건으로 지정하여 연계기관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역량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의 생산 및 보완을 지원하기도 한다. ③ 그리고 연계방식에 대한 국가적 표준화란 기존에 디지털집현전 표준 Open API 방식을 포함한 7가지 연계방식 중에서 기관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연계 사이트의 메타데이터 변경에 대한 실시간 자동 반영을 위해 디지털집현전 표준 Open API 방식으로 점차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성이 높은 사이트는 API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에 선택 가능하던 7가지 연계방식이란 디지털집현전 표준 Open API, OAI-PMH, 기관 Open API 매핑, Agent(DB to DB), Agent(API), Web Crawling, 파일 전송 등이다.[91]

여기서 유의할 만한 점은 필수 관리 메타데이터 11개 항목에 대한 국가적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계기관의 해당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역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의 생산 · 보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계방식의 국가적 표준화, 즉 디지털집현전 표준 Open API 방식으로의 일원화 유도 과정에서 시급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API 개발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위시한 공공데이터 정책에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평가대상 기관의 자체평가와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위한 주체와 대상 간의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고, 연계를 위한 대상 사이트의 홍

91) 국가지식정보위원회(편), 「제1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안)('24~'26)」(관계부처 합동, 2023), '요약' 4쪽 · '본문' 12~13쪽; 메타빌드컨소시엄,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설명서(Ver.1.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4~21쪽 참조. 다만 파일 전송을 통한 연계 방식은 별도의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실무자 간 교신 과정에서 알려진 정보이다.

보와 활용을 촉진시켜 주는 관계이기에 보다 친화적인 모드로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와 품질관리 차원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데이터의 생산과 API의 개발을 지원하기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도 디지털집현전과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디지털집현전과의 연계를 대행한 수준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수준에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집현전'이 이 통합플랫폼 시스템에 주안점을 두고서 2021년 제정된 「국가지식정보법」에 의거하여 구축된 것과 달리,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은 2019년 총리실 주재 역사기관장 간담회 및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학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그리고 2020년 역사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및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관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92]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9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1978년 12월 5일 제정 · 시행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법률 제3116호)과 1979년 5월 8일 제정 · 시행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9455호)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후 추가 개정이 다섯 차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 21일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실태 평가항목에 데이터 표준화 관련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93]

운영실태 평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화 기준은 제Ⅱ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서 데이터의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2가지 통합플랫폼의 역할, 즉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소통과 연계 및 융복합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시된다.[94]

이런 점에서 타 기관 및 서비스 시스템들보다도 통합플랫폼 시스템들은 데이터 표준화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여기서의 ‘준수’란 단순히 공공데이터 정책에 맞게 통합플랫폼 시스템 자체의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합플랫폼이 연계하는 대상 서비스 시스템들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앞서 언급한바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에 비해 디지털집현전은 사이트 연계를 위해 연계 대상 기관이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이럴 경우, 사이트 운영 기관이 원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더 이상 노력할 여지가 없다. 반면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은 자료 연계를 위해 주관 기관이 각 연계 대상 기관으로 요청을 하면서 대상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데이터 표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95]

---

9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학칙공단/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9999,2022040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408,20230516)); 행정안전부(편),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행정안전부, 2023a), 8 · 49쪽.

94) 행정안전부(편), 앞의 책(2023c), 2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 앞의 책, 244~245쪽 참조.

95) 이 점은 각 측면에 따라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고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 표준화 추진의 측면에서는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처럼 각 대상 기

일례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에서는 연계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연계를 위한 데이터의 가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받아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과의 연계에 적합하도록 자체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종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변환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견 연계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소홀하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실 다수의 한국학 분야 데이터 연계 대상 기관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체적인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상존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셋이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데이터셋이 Open API로 공개되면, 연계 대상 기관은 이 표준 데이터셋을 활용해 기관 자체 서비스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표준화할 수 있다.[96]

이러한 역할 체계가 조성되는 배경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사업 운영위원회, 그리고 통합플랫폼 연계 및 상호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각 연계기관들로 구성된 연계기관협의회도 발전적인 의사소통과 검증 체계로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통합플랫폼 차원의 온정적 표준화는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진행되는 레거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표준화 대상으로 고려될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에 대한 데팍토 표준을 선도하는 선제적인 표준화 도모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요청하면서 배려와 포섭 기조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시스템 연계의 안정화 및 공고화 측면에서는 희망하는 대상 기관들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 협조 사항을 조건으로 확약하는 것이 데이터 연계 환경 변경 시의 사전 협조와 적시적 대응 등 다양한 미연의 상황 대처에 더 효과적이다.

96) 이 과정에는 연계기관 자체 서비스 시스템을 유지관리 · 개선하는 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와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Ⅳ. 한국학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표준화, 그리고 통합플랫폼의 온정적 표준화, 이 둘 사이의 상보적 역할은 명시적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만 할 불가피한 체계일 수도 있다. 이 과정은 기존의 한국학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 성장 일로에 있는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일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한국학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차원을 본 장의 제1절로,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차원을 제2절로 편성하여 그 방안을 논구해 볼 것이다.

1. 데이터 기술 형식의 표준화 방안

…

1) DB표준-기관표준-공통표준 수립

…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데이터 표준 관리 도구[97]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앞에서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이 일종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변환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변환 도구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 · 운영하는 것이다.[98] 이는 API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할 수도

97) 제 II 장 참조.

98) 한국의 생태학 데이터 분야에서 시도된 사례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Lee, Hyeonjeong, Hoseok Jung, Miyoung Shin, Ohseok Kwon, “Developing a semi-automatic data conversion tool for Korean ecological data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logy & Environment*, Vol. 41(2017), pp. 1~7.

있다. ...

...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보완

...

3) 범정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및 기타 고려사항

...

2. 데이터 기술 형식의 지능화 전략

…

마스터데이터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연계에도 활용될 시맨틱 데이터 구축의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 플랫폼으로 Wikidata[99] 지식 베이스를 고려할 수 있다.

…

어차피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은 전 세계에 분산된 한국학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고품질의 한국학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므로, 해외에 구축된 글로벌 마스터데이터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기구축된 연계기관의 자료들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연계기관의 서비스가 폐쇄되는 경우의 대처 방안도 감안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

인공지능의 오류[hallucination]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유연하게 지원 가능한 신뢰성 있는 기반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학 분야의 표준화된 지식용어 마스터데이터와 이것을 연계한 표준화된 RDF 데이터의 구축이 고려될 수 있고, 이어서 이것을 JSON[100] 형식으로 직렬화하여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파인튜닝(fine-tuning)함으로써 정교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게 하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다.[101]

---

99) https://www.wikidata.org

100) JSON-L 및 JSON-LD도 포괄하여 지칭한다.

101) 이러한 필자의 구상과 상통하는 일면들을 다음의 자료들 속에서 엿볼 수 있다. OpenAI, “Fine-tuning.” OpenAI developer platform (https://platform.opena

...

i.com/docs/guides/fine-tuning/preparing-your-dataset); 서지영, 『챗GPT : 거부할 수 없는 미래』(길벗, 2023), 145~147쪽; 백성복, 「시맨틱 웹을 위한 요소기술 : 인공지능」, 『TTA 저널』, 203호(2022), 35~40쪽; 김은진 외, 앞의 논문, 33쪽.

1)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와 마스터데이터 관리

...

표준 데이터 repository를 운영하거나 표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데이터 표준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스터데이터 관리(MDM) 개념의 도입이 권고된다.[102]

...

102) 김은진 외, 앞의 논문, 33쪽.

2) 시맨틱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계

...

3) 메타버스와 한국학 데이터

...

Ⅴ. 맺음말

…

이렇게 도출된 방안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복된 데이터나 조직·업무·시스템별 불일치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의사소통을 포함한 정보의 파악과 비교 확인 과정에서 소요될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 연구와 업무의 효율 및 적시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이는 한국학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들로 하여금 오류가 줄어든 정확도 높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인과 조직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데이터의 통합 시 불필요한 부대 작업을 줄이고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며, 정보시스템의 변경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여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 및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정확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기존에 통용되어 온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을 표준화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한국학 데이터 기술 형식의 지능화 전략까지 제대로 실현된다면, 동음이의어나 이음동의어(이칭 포함)를 비롯한 다양한 혼란 요소를 줄이고 미지의 연계 정보를 계발하여 글로벌 지식베이스 기반의 정치(精緻)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 고도화와 신뢰성 증대 및 메타버스에서의 원활한 지식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

...

【참고문헌】

原典

『莊子』　　『荀子』　　『文選』

一次 資料

「대한민국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1988.02.25.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7,20230210), 2023.02.16.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국가지식정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21.12.09.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국가지식정보연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21.12.09.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화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18298,20210720), 2022.07.21.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세종의 집현전, 디지털 시대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 계승 — 제1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개최,“디지털 집현전” 본격 구축」. 세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02.22. 배포.

국가지식정보위원회(편),「제1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안)('24~'26)」. 관계부처 합동, 2023.

행정안전부(편),『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행정안전부(편),『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편람』. 세종: 행정안전

부, 2023a.
행정안전부(편),『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4a.
행정안전부(편),『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b.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2021-32,20210607), 2021.06.07. 시행).
행정안전부(편),『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d.
행정안전부(편),『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c.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023.11.17. 시행).

論著

강순애,「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서지학연구』 제38권, 2007, 5~46쪽.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지리정보 표준화 기반연구 : 지리정보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수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2.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지리정보 표준화 기반연구 : 지리정보 표준화 기본계획』. 수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2.
계찬식·명재호·박주석·박태희·이영수·이승하·장석은·최미영·박민식·김선영·신성수·김인창·이병준·배영준,『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고영만·서태설·조순영,「국가지식정보 자원 분류 체계 표준화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집 제3호, 2006, 151~173쪽.
과학기술부,『연구개발지식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과천: 과학기술

부, 2003.
교육인적자원부,『학술 원자료(raw data) DB구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국립국어원(편), 고석주·이현주·민경모·황은하,『전문 용어 연구 — 정리 현황과 과제』. 파주: 태학사, 2007.
국립중앙도서관(편),『문헌정보 국제표준(ISO/TC46) 동향 및 표준화 정책 : 제1회 문헌정보 국제표준 세미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편),『고전적 DB 표준화 및 공동 활용 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권영옥·김백희,「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구성체계의 접합 방안」.『인문콘텐츠』제9호, 2007, 11~37쪽.
권 은,「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형성과 서양 고전음악의 의미 :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탐색」.『韓國文學論叢』제91집, 2022, 319~352쪽.
권재일,『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김광수,『논리와 비판적 사고』.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쇄신판.
김광수,「전문용어의 표준화에 대하여」. 한국어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 2004, 125~131쪽.
김바로,「<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제57집, 2022, 167~192쪽.
김수영,「근현대『한국학진흥사업 연구성과물』을 통해 본 통합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의 언어학적 방법론 연구」.『인문사회 21』제7권 제4호, 2016, 717~740쪽.
김수영·임준근,「디지털 향토문화 콘텐츠를 위한 XML 기반의 아카이브 시스템에 관한 연구」.『인문콘텐츠』15호, 2009, 147~173쪽.
김영순·김현·김기국·김기덕·박수정·백승국·신광철·오영훈·오장근·왕치현·이윤선·최혜실,『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다할미디어, 2006.
김용수,「세계문학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 한국 학계의 모레티 연구」.『비평과이론』제24권 제3호, 2019, 59~78쪽.
김은진·김민수·김희웅,「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연구」.『지식경영연구』20권 4호, 2019, 23~38쪽.

김지선·장문석·류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제60호, 2021, 371~419쪽.
김 평·성원경·류범종, 「전문 용어 표준화 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 2009, 94~98쪽.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 『디지털인문학』 창간호,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2024.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연구 방법」. 2023 인문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목포, 목포대학교, 2023. 12. 2.
김 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학 연구 추진 방향」.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28~39쪽.
김 현, 「인문정보학에 관한 구상 : 정보 기술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 『民族文化研究』 제35호, 2001, 1~15쪽.
김 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성남: 북코리아, 2012.
김 현,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民族文化研究』 제43호, 2005, 243~290쪽.
김 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서울: HUEBOOKs, 2016.
노영희·홍현진, 『정보통신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대한수의학회 수의학용어위원회(편),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정회』. 서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005.05.24.
류인태, 「인문학이 데이터와 만날 때 : 재현-연결-표준으로서 인문학 데이터의 내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제65집, 2023, 7~41쪽.
박기완·곽지은·김용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본 사림파와 훈구파의 변별성」. 『한문학논집』 제63집, 2022, 147~184쪽.
박주화·변선화, 『2023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 서울: 국립국어원, 2023.
박진호·한상우,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 간의 데이터 연계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4호, 2022, 249~269쪽.
백성복, 「시맨틱 웹을 위한 요소기술 : 인공지능」. 『TTA 저널』 203호, 2022, 35~40쪽.
서동신,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를 위한 시스템 환경」. 『석당논총』 제89집,

2024b, ...~...쪽. ?
서동신,「한국학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정책」.『한국학』제175호, 2024a, 205~241쪽.
서유경,「러시아어 용어・용례 DB 구축 방안 연구」.『통번역학연구』19권 4호, 2015, 23~41쪽.
서지영,『챗GPT :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서울: 길벗, 2023.
설성수·김의섭·박정민·권병욱·장송자·최송호·임윤철·김영범,『학문 표준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전략 기획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성태경,『표준의 경제학 : 이론・사례・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송인식,『프로세스 개선 방법론』. 파주: 이담 Books, 2017.
신대원·임재윤·문용관·정회경,「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 검증 및 전환 모델」.『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18권 3호, 2023, 513~524쪽.
안병학·정우봉·정출헌,「한국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 및 응용 방안 연구」.『民族文化硏究』34권, 2001, 179~389쪽.
양미경.「전주한옥마을과 전주비빔밥의 문화자원화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양창진,「정보화에세이 : 정보통신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그리고 상생(相生)」.『지역정보화』51집, 2008, 118~121쪽.
양창진,「한국학 자료 번역 도구로서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DB구축 연구」.『인문콘텐츠』16호, 2009, 307~335쪽.
염지수,「고문서 관리기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오동근,『編目規則과 MARC 포맷에 있어서 東洋資料의 書誌的 記述에 관한 比較分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오성환,「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의 표준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오영교,「한국학·지역학의 발흥과 한국사연구」.『한국사연구』200호, 2023, 1~34쪽.
오한석,「부품·소재산업분야 R&D 정보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유득선,「구술기록 기술방안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전 공 석사학위논문, 2017.
윤정훈,「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 자원 아카이브즈 구축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강수·이권(역),『장자Ⅱ: 外篇』, 서울: 길, 2019.
이남인,「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구별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 : Aristoteles, Descartes, Husserl을 중심으로」.『철학과 현상학 연구』제55권, 2012, 151~185쪽.
이남희,「디지털 시대의 고문서정리 표준화」.『古文書硏究』제22권, 2003a, 25~50쪽.
이남희,「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하여」.『오늘의 동양사상』14호, 2006, 263~284쪽.
이남희,「인문학과 지식정보화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인문콘텐츠』제1집, 2003b, 117~130쪽.
이남희·김석근,『지식정보화 관련 법령 분석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인문사회연구회, 2002.
이용욱,『정보지식화사회와 인문공학 : 인문학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모색』. 서울: 역락, 2020.
이은섭,「KS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고찰」.『정신문화연구』29권 1호, 2006, 105~125쪽.
이정연,「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이정현,「유니코드 한자 검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보화정책』19권 3호, 2012, 50~63쪽.
이종수,「행정학 분야 학술용어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2008.01., 429~435쪽.
이종하·허진철·윤창희,「차세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Digital Insight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책본부 AI·미래전략센터, 2022.

이진우·명재호·이창수·이해곤·문희진·송동훈·이명주·박상원,『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이창수,「AI 데이터 포럼 표준 개발 현황」.『정보와 통신』39권 1호, 2021, 52~56쪽.

이현주·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07.

이현지,「한의학의 전통적 의료이념과 세계화를 통한 발전전략 연구」.『한국학논집』51권, 2013, 333~355쪽.

이혜원,「데이터 정보 및 의미의 구조화」. 2022년 제1차 '백과사전의 미래' 전문가 콜로키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08.22.

임규건·유철신·강상욱·박승범,「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에서의 UCI 적용 사례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 1055~1065쪽.

임준근,「주제어 중심의 한국학 연구 리뷰 정보 구축 및 활용」.『한국학』36권 1호, 2013, 120~154쪽.

장경률,「동북아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우리말 정보기술 표준화 문제」.『이주와 통합』9권, 2019, 32~35쪽.

장석권,『데이터를 철학하다 : 어떻게 데이터는 지혜가 되는가』. 서울: 흐름, 2018.

장재덕·안건훈,「인문학에서의 방법론」.『江原人文論叢』제8권, 2000, 367~387쪽.

전성규·김병준,「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서북학회월보』와『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개념과 소통』제23호, 2019, 141~188쪽.

전훈지,「한국학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고찰 : 김경일 저,『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 비교 역사의 시각』의 서평」.『비교한국학』29권 2호, 2021, 87~124쪽.

정필모,『目錄組織論』.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4.

정필모,『學術情報媒體의 標準化에 관한 指針』.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4.

정호정·최소희,「번역표기 훈령과 공공번역 표준화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후 번역 실태 연구」.『영미연구』제48권, 2020, 157~190쪽.

조동성·국립국어원,『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06.
조윤휘·이용건,「공공데이터 주요 성과와 제4차('23~'25) 기본계획 추진방향」.『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22-2호, 2022, 791~802쪽.
조혜경,「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주성지,「디지털시대 한국사 연구의 확장과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지동은 · SANTOSH KUMAR RANJAN,「북한과 중국에서 조선어(한국어)정보화 현황과 과제」. 제51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2023. 5. 13., 105~123쪽.
진재교,「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大東文化硏究』98권, 2017, 119~161쪽.
최정도,「인문학 위기 속의 국어정보학의 현황과 전망」.『국어국문학』201호, 2022, 31~62쪽.
최진옥·양창진,「향토인물정보의 형식 표준화 및 종합적 연계 활용 방안」.『인문콘텐츠』제9호, 2007, 125~153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김이란·서태설·이윤석,『문헌정보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화 : ISO/IEC 11179응용』.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편),『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가이드』.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2010 초판; 2020 개정판; 2021 2쇄).
한국저작권위원회(편),『알기쉬운 UCI :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식별체계』.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한국학술진흥재단,『소프트웨어의 요구사양작성에서 설계사양작성까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1990.
한상규·김은진·김희웅,「공공데이터의 표준 비표준 비교를 통한 표준화 방안 연구」.『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9-5호, 2019, 63쪽.
한억수,「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2018-5호, 2018, 77~78쪽.
한종엽,「연속간행물기사에 대한 서지 데이터요소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연속간행물기사에 대한 서지 데이터요소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고양: 한국학술정보, 2005.

황은영,「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한국학』34권 2호, 2011, 305~331쪽.

황은하,「중국에서의 전문용어 표준화」.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07.10., 202~209쪽.

潘燕杰,“我国健康医疗数据治理的标准化路径 ——以美国相关法律为借鉴.” *Journal of Nanjing Medical University: Social Sciences*, Issue 5, 2023, pp. 423~429.

Berners-Lee, Tim, James Hendler, Ora Lassila, “The Semantic Web.” *Scientific American*, Vol. 284, No. 5, 2001.

Berners-Lee, Tim, Mark Fischetti, *Weaving the Web : the original design and ultimate destiny of the World Wide Web by its inventor*.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9.

Drucker, Johanna, “Philosophy and Digital Humanities: A review of Willard McCarty, Humanities Computing (London and NY: Palgrave, 2005).” *Digital Humanities Quarterly*, Vol. 1, No. 1, the Association for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ACH) and the Alliance of Digital Humanities Organizations (ADHO), 2007(https://www.digitalhumanities.org/dhq/vol/1/1/000001/000001.html).

Fuhr, Antonie, Andreas Kurtz, Christian Hiepen, Sabine Müller, “Organoids as Miniature Twins—Challenges for Comparability and Need for Data Standardization and Access.” *Organoids*, Vol. 1, Issue 1, 2022, pp. 28~36.

Fukami, Yoshiaki, “Standardization Procedure for Data Exchange.” *Information*, Vol. 11, Issue 6, 2020, pp. 339~349.

Gal, Michal S., Daniel L. Rubinfeld, “Data Standardiza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94, Issue 4, 2019, pp. 737~770.

Griffin, Julian L., “Ask not what data standards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data standards: a personal view of reporting standardisation

in metabolomic experiments." *Metabolomics*, Vol. 7, Issue 2, 2011, pp. 305~306.

Kim, Youngin, "Noun Phrases in Documents: Preprocessing, Automatic Extra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in Different Categories of Text."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2.

Lee, Hyeonjeong, Hoseok Jung, Miyoung Shin, Ohseok Kwon, "Developing a semi-automatic data conversion tool for Korean ecological data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logy & Environment*, Vol. 41, 2017, pp. 1~7.

Leuf, Bo A., Howard G. Cunningham, *The Wiki Way : Quick Collaboration on the Web*. Boston: Addison-Wesley, 2001.

Lynch, Jack(저)/이혜원·윤소영·최대식(역), 『지식의 전진, 바빌론에서 위키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Schreibman, Susan, Ray Siemens, John Unsworth (ed.), *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 Oxford: Blackwell, 2004(https://companions.digitalhumanities.org/DH).

Кадук, Д. Є., Т. М. Александрова, П. С. Талапова, І. Б. Агєєва, М. М. Ведь, М. О. Трофименко, М. Р. Колесник, Т. С. Несміян, "СУЧАСНИЙ СТАН ТА ПЕРСПЕКТИВИ ВПРОВАДЖЕННЯ СТАНДАРТИЗАЦІЇ ДАНИХ У СИСТЕМУ ОХОРОНИ ЗДОРОВ'Я УКРАЇНИ (огляд літератури)." *Medični Perspektivi*, Vol. 28, Issue 3, 2023, pp. 190~198.

其他 WWW 資料

강용혁, 「참조표준 개발 사례」. 2022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epM92RFqgD8, 2022.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집현전(https://k-knowledge.kr).

국가참조표준센터(https://www.srd.re.kr, 2022.08.2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김창근,「데이터센터의 역할 및 지정절차」. 2022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p5Q7fLE9FoM, 2022.08.21.)
김현, 인문정보학 개론 2024(https://dh.aks.ac.kr/Edu/wiki/index.php/인문정보학_개론_2024).
김현,「디지털 큐레이션 :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개론” 강의자료(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두산, Doopedia(https://www.doopedia.co.kr).
류위선,「참조표준 활용 사례」. 2022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cvgjGDAGu8, 2022.08.21.)
문진규,「국가참조표준 안내 및 홍보」. 2022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dHcoRqwFm1U, 2022.08.21.)
박준형,「참조표준 기술 평가 기준」. 2022 국가참조표준 종합워크숍,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rDbQp7QrHo, 2022.08.21.)
박찬욱,「인문학의 범위」. 매거진 브런치, 2019.04.15.(https://brunch.co.kr/@kultar/70, 2022.08.21.)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용어사전』, 과천: 지식경제부, 2010;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3668&categoryId=43668)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이강원·손호웅,『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서울: 구미서관, 2016;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8439&categoryId=58439).
전종윤,「국가참조표준 체계 및 제도 운영 소개」. 2022 국가참조표준 설명회,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Y_nkM0N9xY0, 2022.08.21.)
최용석,「참조표준 체계 확장과 발전방향」. 2022 국가참조표준 종합워크숍,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2022.06.23.(https://youtu.be/PXluro7-op8, 2022.08.21.)
테크버스,「고장난 공공SW로 10조 혈세 순삭, 국가 데이터 원점부터 재설계. 정부24」(https://youtu.be/DLRrJGlNKtE).
한국국학진흥원,「[2022 전통 기록문화 창작 콘퍼런스] 발표 ② 한국학 자료의

큐레이션과 그 사례 - 양창진 관장(한국학중앙연구원)」(https://youtu.be/duiRHQmfjXY?si=2mXaBMPc8UAg05yD).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온에어(https://dataonair.or.kr, 2024.06.15.).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https://dh.aks.ac.kr/~gwangju/wiki/index.php/광주_문화예술_인문스토리_플랫폼).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인문정보학 위키(https://dh.aks.ac.kr/Edu/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연구(https://dh.aks.ac.kr/hanyang2/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DH Workshop Wiki(https://dh.aks.ac.kr/workshop).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행정안전부, 목록등록관리시스템(https://all.data.go.kr).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 2024.06.15.)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https://www.neh.gov, 2022.08.21.).
OpenAI, ChatGPT API Reference(https://platform.openai.com/docs/api-reference).
OpenAI, “Fine-tuning.” OpenAI developer platform(https://platform.openai.com/docs/guides/fine-tuning/preparing-your-datase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English Dictionary(https://www.oed.com).
Pixabay(https://pixabay.com).
Singhal, Amit, “Introducing the Knowledge Graph: things, not strings,” Google Blog, 2012(https://blog.google/products/search/introducing-knowledge-graph-things-not).
W3C Semantic Web Standards(https://www.w3.org/2001/sw/wiki).
Wikimedia Foundation MediaWiki(https://www.mediawiki.org).

Wikimedia Foundation Wikipedia(https://en.wikipedia.org).

其他 工具 資料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편),『한한대사전』7.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동방미디어주식회사 제작,『(국역) 조선왕조실록 특별보급판』.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9.

민족문화추진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공역]·국사편찬위원회[분류],『(CD-ROM 國譯)朝鮮王朝實錄』.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1.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편),『(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5.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편),『(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7 증보판.

조선왕조실록연구회·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CD-ROM 國譯)高宗純宗實錄; (CD-ROM) 司馬榜目』.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진흥단・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등,『용어로 알아보는 우리시대 DATA』. 성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1; 정보통신용어사전(http://terms.tta.or.kr).

諸橋轍次,『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4~1986 修訂版.

汉语大词典编辑委员会・汉语大词典编纂处(共编),『汉语大词典 光碟』. 香港: 商务印书馆有限公司, 2002 2.0版; Lingoes Dictionaries(http://www.lingoes.net).

其他 刊行物

한국정보화진흥원(편),「데이터 표준화」. 공공정보 품질관리 실무 교육,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0.15.

Abstract

【부록 1】 공통표준용어 목록 예시

(가나다순)

6차 제정
빨간색 표기 개정
파란색 표기 한국학 데이터 관련 참고 예시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	1 회섭취참고량명	만 3 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 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의 이름	RAFOS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1 회섭취참고량이름, 1 회섭취참고량명칭
2	API 명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의 이름	API_NM	명 V300	-	300 자리 이내 문자	-	-	-	-
3	API 설명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API_EXPL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4	CAS 번호	화학적 동질성을 갖는 물질에 대하여 미국 화학회(化學會)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	CAS_NO	번호 V20	-	20 자리 이내 문자	-	-	-	-
5	CPU 사용률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비율	CPU_USGRT	율 N5,2	-	999.99	999.99	-	-	-
6	FAQ 내용	많은 사람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은 문서의 내용	FAQ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7	FAQ 일련번호	많은 사람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은 문서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속되게 매긴 번호	FAQ_SN	일련번호 N22	-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	-	-
8	FAQ 제목	많은 사람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은 문서의 제목	FAQ_TTL	명 V256	-	256 자리 이내 문자	-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9	GIS 자료여부	지도에 관한 속성 정보를 해석하는 지도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인지 여부	GIS_DATA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GIS 데이터 여부
10	HTML 사용여부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지 여부	HTML_US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1	HTML 여부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인지 여부	HTML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2	IP 주소	OSI 모델의 제 3 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IP 계층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간 패킷의 전송, 즉 경로 제어를 위한 규약에 따른 주소	IP_ADDR	주소 V15	-	15 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9	-	-	아이피주소
13	MAC 주소	대부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어댑터(NIC)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	MAC_ADDR	주소 V17	-	17 자리 이내 문자	ff : ff : ff : ff : ff : ff	-	-	-
14	PDF 파일명	원본 문서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플랫폼 환경에서 문서를 동일하게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맷으로 작성된 파일의 이름	PDF_FILE_NM	명 V300	-	300 자리 이내 문자	-	-	-	-
15	PG 거래번호	인터넷상에서 금융 기관과 하는 결제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각각의 결제 건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PG_DLNG_NO	번호 V20	-	20 자리 이내 문자	-	-	-	-
16	SMS 내용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SMS_CN	내용 V2000	-	2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7	SMS 발송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발송했는지 여부	SMS_SNDNG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8	SMS 사용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단문 문자 메시지를 목적에 맞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SMS_US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9	SMS 수신동의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의 수신을 허락하는지 여부	SMS_RCPTN_AGR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20	SMS 수신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수신했는지 여부	SMS_RCPTN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21	SMS 수신전화번호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수신하는 전화번호	SMS_RCPTN_TELNO	전화번호 V11	-	11 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 or 999-(9)999-9999 or 9999-9999 or 999-(9)999-9999	-	-	-
22	SMS 신청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의 수신을 할려 청하였는지 여부	SMS_APLY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SMS 여부
23	SMS 전송내용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보낸 내용	SMS_TRSM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SMS 발송내용
24	SMS 전송여부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보냈는지 여부	SMS_TRSM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25	SMS 전송일련번호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도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보낸 것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속되게 매긴 번호	SMS_TRSM_SN	일련번호 N22	-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	-	-
26	SMS 전송일시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보낸 날짜와 시각	SMS_TRSM_DT	연월일시분초 D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YYYYMMDDHH24MISS	YYYY-MM-DD HH:MI:SS	-	-	SMS 발송일시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MI : 00~59, SS : 00~59					
27	SMS 전송일자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 장비 없이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보낸 날짜	SMS_TRSM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SMS 발송일자
28	SQL 내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의 조작과 관리를 위해 작성한 표준 질의 언어의 내용	SQL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29	URL 주소	확인된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를 탐색하는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정하는 URL 로 정의된 주소	URL_ADDR	주소 V2000	-	2000 자리 이내 문자	-	-	-	-
30	VOC 내용	콜센터에 접수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 요구사항, 불만 사항의 내용	VOC_CN	내용 V2000	-	2000 자리 이내 문자	-	-	-	-
31	X 좌표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원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좌표축(X 축과 Y 축)을 사용해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인 X, 즉 그 점의 가로좌표	XCRD	좌표 N13,10	-	999.9999999999	999.9999999999	-	-	-
32	Y 좌표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원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좌표축(X 축과 Y 축)을 사용해서 Y 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인 Y, 즉 그 점의 세로좌표	YCRD	좌표 N13,10	-	999.9999999999	999.9999999999	-	-	-
33	가감금액	더하거나 뺀 돈의 액수	ADSB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34	가감점수	더하거나 뺀 점수	ADSB_SCR	수 N7	-	9999999	9999999	-	-	-
35	가구수	일정한 범위 또는 단위 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체 수	HSHD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36	가능여부	할 수 있는지 여부	PSBLTY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37	가동개시일자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이거나 행동을 시작한 날짜	OPRTNG_STR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38	가동시간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데 걸리는 일정한 시간	OPRTNG_HR	시분초 C6	HH : 00~23, MI : 00~59, SS : 00~59	HH24MISS	HH:MI:SS	-	-	-
39	가동여부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이거나 작동을 시작했는지 여부	OPRTNG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40	가동일자	사람이나 기계 등이 움직이거나 작동한 날짜	OPRT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41	가로길이	어떤 대상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	WDTH_LEN	수 N7	-	9999999	9999999	-	-	-
42	가맹점대표자명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	FRCS_RPRSV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43	가맹점명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에 붙인 이름	FRCS_NM	명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가맹점이름, 가맹점명칭
44	가맹점번호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FRCS_NO	번호 V20	-	20 자리 이내 문자	-	-	-	-
45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을 구별하여 관리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국세청에서 매기는 변호	FRCS_BRNO	사업자등록번호 C10	-	10 자리 문자	999-99-99999	-	-	-
46	가맹점상세주소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의 동(棟) 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가 나타난 주소	FRCS_DADDR	상세주소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47	가맹점우편번호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의 우편번호	FRCS_ZIP	우편번호 C5	-	5 자리 문자	99999	-	-	-
48	가맹점전화번호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의 전화번호	FRCS_TELNO	전화번호 V11	-	11 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 or 999-(9)999-9999 or 9999-9999 or 999-(9)999-9999	-	-	-
49	가맹점주소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상점의 주소	FRCS_ADDR	주소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50	가산금리	금융 기관에서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	ADTN_IRT	율 N5,2	-	999.99	999.99	-	-	-
51	가산금액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돈의 액수	ADTN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52	가산비율	금융 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백분율로 산정한 것	ADTN_RT	율 N5,2	-	999.99	999.99	-	-	-
53	가산세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ADDTX	금액 N18	-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	-	-
54	가산월수	어떠한 일의 기준을 넘어서 추가된 개월의 수	ADTN_MM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55	가산일수	어떠한 일의 기준을 넘어서 추가된 날의 수	ADTN_DAY_CNT	수 N7	-	9999999	9999999	-	-	-
56	가산점수	어떠한 일의 기준을 넘어서 추가된 것을 성적으로 나타내는 점수	ADTN_SCR	수 N7	-	9999999	9999999	-	-	-
57	가상계좌번호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대금을 입금하도록 임시로 계좌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VR_ACTNO	계좌번호 V20	-	20 자리 이내 문자	-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58	가상계좌여부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대금을 입금하도록 임시로 부여한 계좌인지 여부	VR_BACNT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59	가상계좌일련번호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대금을 입금하도록 임시로 부여한 계좌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속되게 매긴 번호	VR_BACNT_SN	일련번호 N22	-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	-	-
60	가수금	부기(簿記)에서 처리할 계정이 미정(未定)인 상태로 우선 받아 두는 돈	SPRCP	금액 N15	-	99999999999 9999	999,999,999, 999,999	-	-	-
61	가스사용량	가스를 쓰는 양	GAS_USQTY	수 N10,3	-	9999999.999	9999999.999	-	-	-
62	가압류금액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임시로 확보한 채무자 재산의 금액	PRAT_AMT	금액 N15	-	99999999999 9999	999,999,999, 999,999	-	-	-
63	가압류여부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했는지 여부	PRAT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64	가압류일련번호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속되게 매긴 번호	PRAT_SN	일련번호 N22	-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	-	-
65	가입금액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는 돈의 액수	JOIN_AMT	금액 N15	-	99999999999 9999	999,999,999, 999,999	-	-	-
66	가입시각	조직이나 단체 등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등을 신청한 어느 한 시점	JOIN_TM	시분초 C6	HH : 00~23, MI : 00~59, SS : 00~59	HH24MISS	HH:MI:SS	-	-	-
67	가입신청일자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청한 날짜	JOIN_APLY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68	가입여부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갔는 지 여부	JOIN_YN	여부 C1	Y : 여(예), N :	1 자리 문자	Y or N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부(아니요)					
69	가입일시	조직이나 단체 등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등을 신청한 날짜와 시각	JOIN_DT	연월일시분초 D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SS : 00~59	YYYYMMDDHH24MISS	YYYY-MM-DD HH:MI:SS	-	-	-
70	가입일자	조직이나 단체 등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등을 신청한 날짜	JOIN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71	가입자명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	SBSR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72	가입자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간 사람의 수	SBSR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73	가족관계코드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즉 혼인, 혈연, 입양 등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	FAM_REL_CD	코드 C3	001 : 본인, 002 : 처 ...	3 자리 문자	-	가족관계	인사혁신처	-
74	가족명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 이름	FAM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75	가족생년월일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태어난 날짜	FAM_BRDT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76	가족수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 수	FAM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77	가족연령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FAM_AGE	수 N3	-	999	999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구성원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횟수								
78	가족일련번호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에 일정한 방식으로 연속되게 매긴 번호	FAM_SN	일련번호 N22	-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99999999999	-	-	-
79	가족주민등록번호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FAM_RRNO	주민등록번호 C13	-	13 자리 문자	999999-9999999	-	-	-
80	가중치비율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백분율로 산정한 것	WGVL_RT	율 N5,2	-	999.99	999.99	-	-	-
81	가지급금액	정한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돈의 액수	PRVPY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가지불금액
82	간선시설여부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에 연결하는 시설인지 여부	ATLFCS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83	간접노무비	기업 회계의 원가 계산에서, 특정 제품에 들어간 비용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워 많은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치는 노무비. 휴업 임금, 퇴직 적립금, 후생 복지금 따위가 이에 속한다	IDRT_LBCO	비용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84	간접비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에 공통으로 드는 비용	IDRCO	비용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간접생산비, 공통비용
85	간접인건비	현장 작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부리는 데에 드는 비용	IDRT_LBRCO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86	간행물명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의 이름	PBLC_NM	명 V300	-	300 자리 이내 문자	-	-	-	발간물명
87	간호사수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법으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의 수	NRS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88	감가상각률	유형의 고정 자산의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비율	DPRT	율 N5,2	-	999.99	999.99	-	-	-
89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을 충당하는 비용	DPCO	비용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90	감독자명	감독하는 사람의 이름	SPVSR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91	감리금액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돈	SPVS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92	감리시작일자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시작한 날짜	SPVS_BG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93	감리종료일자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끝마친 날짜	SPVS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94	감면금액	정해진 금액에서 덜어 주거나 면하여 준 돈의 액수	RDCT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95	감면사유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준 사유	RDCT_RS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96	감면신청일자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줄 것을 알려 요청한 날짜	RDCT_APLY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97	감면율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한 정도 또는 그 비율	RDCRT	율 N5,2	-	999.99	999.99	-	-	감면비율
98	감면일자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준 날짜	RDC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99	감면종료일자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끝마친 날짜	RDCT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YYYYMMDD	YYYY-MM-DD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01~12, DD : 01~31					
100	감사결과내용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한 결론을 서술한 내용	ADT_RSLT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01	감사명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것의 이름	ADT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102	감사번호	잘 살펴 조사하는 일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ADT_NO	번호 V50	-	50 자리 이내 문자	-	-	-	-
103	감사시작일자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감사를 시작한 날짜	ADT_BG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04	감사연도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감사를 시행한 연도	ADT_YR	연도 C4	YYYY : 0001~9999	YYYY	YYYY	-	-	-
105	감사인원수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감사에 참여한 인원수	ADT_NOPE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106	감사일자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감사를 시행한 날짜	AD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07	감사종료일자	어떤 일에 대해 잘 살펴서 조사하는 감사를 끝마친 날짜	ADT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08	감소금액	특정 기준에서 줄어든 돈의 액수	DCRS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109	감액사유	돈의 액수를 줄인 사유	RDAMT_RS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10	감액여부	돈의 액수가 줄었는지 여부	RDAMT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11	감액일자	돈의 액수를 줄인 날짜	RDAM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12	감점점수	어떤 기준에서 깎인 점수	SBPT_SCR	수 N7	-	9999999	9999999	-	-	-
113	감정가	골동품, 역사 자료, 보석, 토지 따위의 사물에 대하여 특성이나 가치를 분별하여 매기는 가격	APPRC	가격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감정값
114	감정기관명	감정 평가를 시행하는 조직의 이름	APRS_INST_NM	명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115	감정평가금액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도안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돈의 액수	APRS_EVL_AMT	금액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감정금액
116	감정평가수수료	감정 기관이 평가해 주었을 때 그 보상으로 치르는 비용	APRS_EVL_FEE	요금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117	감정평가의뢰일자	감정평가사에게 도안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하여 판정을 의뢰한 날짜	APRS_EVL_RQS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18	감정평가일자	감정 업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한 날짜	APRS_EVL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감정일자
119	강사명	학교나 학원 등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의 이름	INSTR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강사이름
120	강사번호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식별 번호	INSTR_NO	번호 V50	-	50 자리 이내 문자	-	-	-	-
121	강사소속명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이 속한 조직의 이름	INSTR_OGDP_NM	명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122	강사이메일주소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INSTR_EML_ADDR	주소 V320	-	320 자리 이내 문자	-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23	강사전화번호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INSTR_TELNO	전화번호 V11	-	11 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 or 999-(9)999-9999 or 9999-9999 or 999-(9)999-9999	-	-	-
124	강사휴대전화번호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받아 강의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INSTR_MBL_TELNO	전화번호 V11	-	11 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 or 999-(9)999-9999 or 9999-9999 or 999-(9)999-9999	-	-	-
125	강수량	비, 눈, 우박, 안개 따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 단위는 mm.	RN	수 N8,3	-	99999.999	99999.999	-	기상청	-
126	강수확률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임의의 장소에서 지정한 시간 동안 측량할 만한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릴 확률	POR	율 N5,2	-	999.99	999.99	-	기상청	-
127	강의내용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의 내용	LCTR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강좌내용
128	강의명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의 이름	LCTR_NM	명 V300	-	300 자리 이내 문자	-	-	-	-
129	강의시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에 걸리는 일정한 시간	LCTR_HR	시분초 C6	HH : 00~23, MI : 00~59, SS : 00~59	HH24MISS	HH:MI:SS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30	강의시작시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시작한 시와 분	LCTR_BGNG_HM	시분 C4	HH : 00~23, MI : 00~59	HH24MI	HH:MI	-	-	-
131	강의시작일자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시작한 날짜	LCTR_BG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32	강의실명	강의하는 데 쓰는 방의 이름	LCTRM_NM	명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133	강의일자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친 날짜	LCTR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34	강의종료시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끝마친 시와 분	LCTR_END_HM	시분 C4	HH : 00~23, MI : 00~59	HH24MI	HH:MI	-	-	-
135	강의종료일자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끝마친 날짜	LCTR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36	개발내용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은 것의 내용	DVLP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37	개발시작일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 것을 시작하는 날짜	DVLP_BG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38	개발일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은 날짜	DVLP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39	개발자명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 사람의 이름	DVLPR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140	개발종료일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 것을 끝마치는 날짜	DVLP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41	개방여부	어떠한 공간이나 자료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지 여부	OPN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42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INDIV_OALP	가격 N10	-	9999999999	9,999,999,999	-	국토교통부	개별표준지공시지가
143	개별전화번호	전화가입자에게 부여된 전화번호 중 (전화교환)국전화번호 뒤에 오며 전화번호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 4 자리로 구성된 번호	INDIV_TELNO	전화번호 V4	-	4 자리 이내 문자	9999	-	-	끝자리전화번호, 끝전화번호, 개별번호, 뒷자리전화번호
144	개선내용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든 내용	IMPV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개선사항
145	개선방안내용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드는 방안에 관한 내용	IMPV_MSRS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46	개선여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든 것을 행하는지 여부	IMPV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47	개선의견내용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드는 의견에 관한 내용	IMPV_OPNN_CN	내용 V4000	-	4000 자리 이내 문자	-	-	-	-
148	개설연도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하는 연도	ESTBL_YR	연도 C4	YYYY : 0001~9999	YYYY	YYYY	-	-	-
149	개설일자	설비나 제도 등을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처음 시작한 날짜	ESTBL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YYYYMMDD	YYYY-MM-DD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01~12, DD : 01~31					
150	개시결정일자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기로 정한 날짜	STRT_DCSN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51	개시여부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는지 여부	STRT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52	개시일자	행동이나 일 등을 시작한 날짜	STR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53	개업연월	영업을 시작한 연도와 월	OPBIZ_YM	연월 C6	YYYY : 0001~9999, MM : 01~12	YYYYMM	YYYY-MM	-	-	-
154	개업일자	영업을 처음 시작한 날짜	OPBIZ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55	개인법인구분명	사업자 유형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로 가른 것의 이름을 구분하는 이름	INDV_CORP_SE_NM	명 V100	-	100 자리 이내 문자	-	-	-	-
156	개인사업자여부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인지 여부	INDV_BZMN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57	개인식별번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신체의 신원을 지문, 혈액형, 발자국, 글씨 따위를 조사하여 컴퓨터 시스템 따위의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개인에게 부여하는 식별 번호	PRIDTF_NO	주민등록번호 C13	-	13 자리 문자	999999-9999999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158	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허락하는지 여부	PRVC_CLCT_AGR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59	개인정보수집동의일자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허락한 날짜	PRVC_CLCT_AGRE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0	개인정보여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PRVC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61	개인정보제공동의여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하는지 여부	PRVC_PVSN_AGR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2	개인정보제공동의일자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한 날짜	PRVC_PVSN_AGRE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3	개인정보포함여부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PRVC_INCL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64	개인정보활용동의여부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락하는지 여부	PRVC_UTLZ_AGRE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65	개인회생신청여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채무로 인한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INDV_RVVL_APLY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66	개인회생여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채무로 인한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를	INDV_RVVL_YN	여부 C1	Y : 여(예), N :	1 자리 문자	Y or N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받았는지 여부			부(아니요)					
167	개점일자	새로 가게를 내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날짜	OPSTR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68	개정번호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RVSN_NO	번호 V50	-	50 자리 이내 문자	-	-	-	-
169	개정일자	주로 문서의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한 날짜	RVSN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70	개찰시각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를 시작하는 시각	BDOPN_TM	시분초 C6	HH : 00~23, MI : 00~59, SS : 00~59	HH24MISS	HH:MI:SS	-	-	-
171	개찰일시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를 시작하는 일시	BDOPN_DT	연월일시분초 D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SS : 00~59	YYYYMMDD HH24MISS	YYYY-MM-DD HH:MI:SS	-	-	-
172	개찰일자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를 시작하는 날짜	BDOPN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73	개최시작일자	행사나 회의를 주최하여 시작하는 날짜	HDMT_BGNG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YYYYMMDD	YYYY-MM-DD	-	-	-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MM : 01~12, DD : 01~31					
174	개최연도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는 연도	HDMT_YR	연도 C4	YYYY : 0001~9999	YYYY	YYYY	-	-	-
175	개최일자	행사나 회의를 주최하여 여는 날짜	HDM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76	개최종료일자	행사나 회의를 주최한 것을 끝마치는 날짜	HDMT_END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
177	개통여부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를 완성하거나 이어 통하게 했는지 여부	OPNG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
178	객실수	손님을 거처하게 하거나 접대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방의 개수	GSRM_CNT	수 N10	-	9999999999	9,999,999,999	-	-	-
179	객체명	추상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경계가 잘 정의되어 명확하고 식별성을 갖고 있으며 상태 및 행동을 캡슐화하는 개체에 대한 이름	OBJT_NM	명 V200	-	200 자리 이내 문자	-	-	-	-
180	갱신시각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어느 한 시점	UPDT_TM	시분초 C6	HH : 00~23, MI : 00~59, SS : 00~59	HH24MISS	HH:MI:SS	-	-	업데이트시각
181	갱신여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했는지 여부	UPDT_YN	여부 C1	Y : 여(예), N : 부(아니요)	1 자리 문자	Y or N	-	-	업데이트여부
182	갱신일시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한 날짜와 시각	UPDT_DT	연월일시분초 D	YYYY : 0001~9999, MM :	YYYYMMDD HH24MISS	YYYY-MM-DD HH:MI:SS	-	-	업데이트일시

번호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공통표준도메인명	허용값	저장 형식	표현 형식	행정표준코드명	소관기관명	용어 이음동의어 목록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SS : 00~59					
183	갱신일자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한 날짜	UPDT_YMD	연월일 C8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YYYYMMDD	YYYY-MM-DD	-	-	업데이트일자
184	거래가격	사고파는 가격	DLNG_PRC	가격 N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	-	-
(후략: 185~5386)										

【부록 2】 공통표준단어 목록 예시 (가나다순)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 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1	1회섭취참고량	RAFOS	Reference Amount For One Serving	一回攝取參考量.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한다.	N	-	-	-
2	API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	N	-	-	-
3	CAS	CAS	Chemical Abstract Service	CAS. 화학적 동질성을 갖는 물질에 대하여 미국 화학회(化學會)에서 부여한 고유 번호	N	-	-	-
4	CPU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	N	-	-	-
5	FAQ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FAQ. 많은 사람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은 문서	N	-	-	-
6	GI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에 관한 속성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지도 정보 시스템	N	-	-	-
7	HTML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홈페이지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시가 있는 글을 선택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 주거나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실행				
8	IP	IP	Internet Protocol	IP. OSI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IP계층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간 패킷의 전송, 즉 경로 제어를 위한 규약	N	-	아이피	-
9	MAC	MAC	Medium Access Control	MAC.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의 일부로서, 동일한 매체를 여러 노드가 공유하는 특성상에 존재하는 구내 정보 통신망(LAN) 고유의 계층	N	-	-	-
10	PDF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원본 문서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플랫폼 환경에서 문서를 동일하게 출력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 포맷	N	-	-	-
11	PG	PG	Payment Gateway	PG. 인터넷상에서 금융 기관과 하는 거래를 대행해 주는 업체. 신용 카드 거래, 계좌 이체, 핸드폰 이용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준다.	N	-	-	-
12	SMS	SMS	Short Message Service	SMS. 컴퓨터,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도 간단한 단문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자 서비스	N	-	-	-
13	SQL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또는 관계형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RDSMS)의 조작과 관리를 위한 표준 질의 언어	N	-	-	-
14	URL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확인된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를 탐색하는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URL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15	VOC	VOC	Voice of Customer	VOC. 콜센터에 접수되는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관서별로 지표화하여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체감 서비스를 향상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	N	-	-	-
16	X좌표	XCRD	X-Coordinate	X座標.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원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좌표축(X축과 Y축)을 사용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인 x를 그 점의 x좌표 또는 가로좌표라고 함	Y	좌표	-	-
17	Y좌표	YCRD	Y-Coordinate	Y座標.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원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좌표축(X축과 Y축)을 사용해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인 y를 그 점의 y좌표 또는 세로좌표라고 함	Y	좌표	-	-
18	가감	ADSB	Addition And Subtraction	加減. 더하거나 빼는 일 또는 그렇게 하여 알맞게 맞추는 일	N	-	-	-
19	가격	PRC	Price	價格.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Y	가격	-	-
20	가구	HSHD	Household	家口.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N	-	-	-
21	가능	PSBLTY	Possibility	可能.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	N	-	-	-
22	가동	OPRTNG	Operating	稼動. 사람이나 기계 따위가 움직여 일함.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여 일하게 함	N	-	-	-
23	가로	WDTH	Width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그 길이	N	-	-	-
24	가맹점	FRCS	Franchise	加盟店.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25	가산	ADTN	Addition	加算. 더하여 셈함. 몇 개의 수나 식 따위를 합하여 계산함. 또는 그런 셈	N	-	-	-
26	가산세	ADDTX	Additional Tax	加算稅.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Y	금액	-	-
27	가상	VR	Virtual	假象.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假想.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	N	-	-	-
28	가수금	SPRCP	Suspense Receipt	假受金. 부기(簿記)에서 처리할 계정이 미정(未定)인 상태로 우선 받아 두는 돈	Y	금액	-	-
29	가스	GAS	Gas	GAS. 기체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N	-	-	-
30	가압류	PRAT	Provisional Attachment	假押留.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N	-	-	-
31	가액	EQVL	Equivalent Value	價額.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	Y	금액	-	-
32	가입	JOIN	Join	加入.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함	N	-	-	-
33	가입자	SBSR	Subscriber	加入者.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간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한 사람	N	-	-	-
34	가족	FAM	Family	家族.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35	가중치	WGVL	Weighted Value	加重値.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	N	-	-	-
36	가지급	PRVPY	Provisional Payment	假支給. 치를 돈 따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한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일	N	-	가지불	-
37	가치	WRTH	Worth	價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N	-	-	-
38	각하	RJTN	Rejection	却下.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N	-	-	-
39	간선시설	ATLFCS	Arterial Facilities	幹線施設.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	N	-	-	-
40	간접	IDRT	Indirect	間接. 중간에 매개(媒介)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	N	-	-	-
41	간접비	IDRCO	Indirect Cost	間接費.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	Y	비용	간접생산비, 공통비용	-
42	간행물	PBLC	Publication	刊行物.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N	-	발간물	-
43	간호사	NRS	Nurse	看護師.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법으로 그 자격을 정함	N	-	-	-
44	감가상각률	DPRT	Depreciation Rate	減價償却率. 유형의 고정 자산의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비율	Y	율	-	-
45	감가상각비	DPCO	Depreciation Cost	減價償却費. 감가상각액을 충당하는 비용	Y	비용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46	감독자	SPVSR	Supervisor	監督者. 감독하는 사람	N	-	-	-
47	감리	SPVS	Supervision	監理. 감독하고 관리함	N	-	-	-
48	감면	RDCT	Reduction	減免.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N	-	-	-
49	감면율	RDCRT	Reduction Rate	減免率.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한 정도. 또는 그 비율	Y	율	-	-
50	감사	ADT	Audit	勘査. 잘 살펴 조사함	N	-	-	-
51	감소	DCRS	Decrease	減少. 양이나 수치가 줆.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	N	-	-	-
52	감액	RDAMT	Reduction Amount	減額. 액수를 줄임 또는 줄인 액수	N	-	-	-
53	감점	SBPT	Subtract Points	減點. 점수가 깎임 또는 그 점수	N	-	-	-
54	감정	APRS	Appraisal	鑑定.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N	-	-	-
55	감정가	APPRC	Appraised Price	鑑定價. 골동품, 역사 자료, 보석, 토지 따위의 사물에 대하여 특성이나 가치를 분별하여 매기는 가격	Y	가격	감정값	-
56	값	VL	Value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N	-	-	-
57	강사	INSTR	Instructor	講師.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	N	-	-	-
58	강수량	RN	Rainfall	降水量. 비, 눈, 우박, 안개 따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 단위는 mm.	Y	수	-	-
59	강수확률	POR	Probability Of Rainfall	降水.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임의의 장소에서 지정한 시간	Y	율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동안 측량할 만한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릴 확률				
60	강의	LCTR	Lecture	講義.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N	-	-	-
61	강의실	LCTRM	Lecture Room	講義室. 강의하는 데 쓰는 방	N	-	-	-
62	개발	DVLP	Development	開發.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요구분석, 설계, 코딩, 통합, 시험, 설치와 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수를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말함	N	-	-	-
63	개발자	DVLPR	Developer	開發者.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사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개발 활동(요구 분석, 설계, 시험에서 안수까지)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N	-	-	-
64	개방	OPN	Open	開放.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	N	-	-	-
65	개별	INDIV	Individual	個別.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	N	-	-	-
66	개선	IMPV	Improvement	改善.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N	-	-	-
67	개설	ESTBL	Establishment	開設.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	N	-	-	-
68	개시	STRT	Start	開始.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69	개업	OPBIZ	Opening of Business	開業 영업을 처음 시작함	N	-	-	-
70	개요	OTLN	Outline	槪要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	Y	내용	-	-
71	개월수	MCNT	Month Count	個月數 개월의 수효	Y	수	-	-
72	개인	INDV	Individuals	個人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N	-	-	-
73	개인식별	PRIDTF	Personal Identification	個人識別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시체의 신원을 지문, 혈액형, 발자국, 글씨 따위를 조사하여 알아내는 일	N	-	-	-
74	개인정보	PRVC	Privacy	個人情報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N	-	-	-
75	개점	OPSTR	Open Store	開店 새로 가게를 내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함	N	-	-	-
76	개정	RVSN	Revision	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N	-	-	-
77	개찰	BDOPN	Bid Opening	開札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함	N	-	-	-
78	개최	HDMT	Hold A Meeting	開催 모임이나 회의 등을 주최하여 엶	N	-	-	-
79	개통	OPNG	Opening	開通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를 완성하거나 이어 통하게 함	N	-	-	-
80	객실	GSRM	Guest Room	客室 손님을 거처하게 하거나 접대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방	N	-	-	-
81	객체	OBJT	Object	客體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 또는 모두 포함한 개념	N	-	-	-

번호	공통표준단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 영문명	공통표준단어 설명	형식단어 여부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금칙어 목록
82	갱신	UPDT	Update	更新.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N	-	업데이트	-
83	거래	DLNG	Dealings	去來. 주고 받음 또는 사고 팖	N	-	-	-
84	거래자	DLR	Dealer	去來者.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주고받는 사람	N	-	-	-
85	거래처	CNPT	Counterparty	去來處. 돈이나 물건 따위를 계속 거래하는 곳	N	-	-	-
86	거절	RFSL	Refusal	拒絕.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N	-	-	-
87	거주	HAB	Habitation	居住.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N	-	주거	-
88	거주지	RSDC	Residence	居住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N	-	-	-
(후략: 185~1699)								

【부록 3】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전체 / 2023. 11. 7. 기준) (가나다순)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1	금액	가격	가격N10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NUMERIC	10	-	9999999999	9,999,999,999	원	-
2	금액	가격	가격N15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NUMERIC	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원	-
3	금액	금액	금액N13	돈의 액수	NUMERIC	13	-	9999999999999	9,999,999.999,999	원	-
4	금액	금액	금액N15	돈의 액수	NUMERIC	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원	-
5	금액	금액	금액N17	돈의 액수	NUMERIC	17	-	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	원	-
6	금액	금액	금액N18	돈의 액수	NUMERIC	18	-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원	-
7	금액	금액	금액N22,2	돈의 액수	NUMERIC	22	2	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9	원	-
8	금액	비용	비용N15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NUMERIC	15	-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원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9	999		
9	금액	요금	요금N15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	NUMERIC	15	-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원	-
10	날짜/시간	시분	시분C4	특정한 시간을 시(00~23), 분(00~59)까지 정하여 문자형 데이터로 표현한 것	CHAR	4	-	HH24MI	HH:MI	시분	HH : 00~23, MI : 00~59
11	날짜/시간	시분초	시분초C6	시간상의 한 순간을 시, 분, 초로 표기, 시간의 어느 한 시점	CHAR	6	-	HH24MISS	HH:MI:SS	시분초	HH : 00~23, MI : 00~59, SS : 00~59
12	날짜/시간	연도	연도C4	특정한 연(年)을 정하여 표현한 것	CHAR	4	-	YYYY	YYYY	연도	YYYY : 0001~9999
13	날짜/시간	연월	연월C6	특정한 연(年), 월(01~12)을 정하여 표현한 것	CHAR	6	-	YYYYMM	YYYY-MM	연월	YYYY : 0001~9999, MM : 01~12
14	날짜/시간	연월일	연월일C8	특정한 날짜를 연(年), 월(01~12), 일(01~31)로 정하여 표현한 것	CHAR	8	-	YYYYMMDD	YYYY-MM-DD	연월일	YYYY : 0001~9999, MM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01~12, DD : 01~31
15	날짜/시간	연월일시분	연월일시분C12	특정한 시간을 연(年), 월(01~12), 일(01~31), 시(00~23), 분(00~59)까지 정하여 문자형 데이터로 표현한 것	CHAR	12	-	YYYYMMDDHH24MI	YYYY-MM-DD HH:MI	연월일시분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16	날짜/시간	연월일시분초	연월일시분초C14	특정한 시간을 연(年), 월(01~12), 일(01~31), 시(00~23), 분(00~59), 초(00~59)까지 정하여 문자형 데이터로 표현한 것	CHAR	14	-	YYYYMMDDHH24MISS	YYYY-MM-DD HH:MI:SS	연월일시분초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SS : 00~59
17	날짜/시간	연월일시분초	연월일시분초D	특정한 시간을 연(年), 월(01~12), 일(01~31), 시(00~23), 분(00~59), 초(00~59)까지 정하여 날짜형 데이터로 표현한 것	DATETIME	-	-	YYYYMMDDHH24MISS	YYYY-MM-DD HH:MI:SS	연월일시분초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HH : 00~23, MI : 00~59, SS : 00~59
18	날짜/시간	월	월C2	한 해의 특정한 월(01~12)을 정하여 표현한 것	CHAR	2	-	MM	MM	월	MM : 01~12
19	내용	내용	내용V1000	문자형 데이터를 정의한 것	VARCHAR	1000	-	1000자리 이내 문자	-	-	-
20	내용	내용	내용V2000	문자형 데이터를 정의한 것	VARCHAR	2000	-	2000자리 이내 문자	-	-	-
21	내용	내용	내용V4000	문자형 데이터를 정의한 것	VARCHAR	4000	-	4000자리 이내	-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문자			
22	명칭	명	명V5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5	-	5자리 이내 문자	-	-	-
23	명칭	명	명V2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20	-	20자리 이내 문자	-	-	-
24	명칭	명	명V4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40	-	40자리 이내 문자	-	-	-
25	명칭	명	명V8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80	-	80자리 이내 문자	-	-	-
26	명칭	명	명V10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100	-	100자리 이내 문자	-	-	-
27	명칭	명	명V20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200	-	200자리 이내 문자	-	-	-
28	명칭	명	명V256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256	-	256자리 이내 문자	-	-	-
29	명칭	명	명V300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VARCHAR	300	-	300자리 이내 문자	-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30	명칭	상세주소	상세주소V200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의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200	-	200자리 이내 문자	-	-	-
31	명칭	주소	주소V15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15	-	15자리 이내 문자	-	-	-
32	명칭	주소	주소V17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17	-	17자리 이내 문자	-	-	-
33	명칭	주소	주소V200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200	-	200자리 이내 문자	-	-	-
34	명칭	주소	주소V320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320	-	320자리 이내 문자	-	-	-
35	명칭	주소	주소V2000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VARCHAR	2000	-	2000자리 이내 문자	-	-	-
36	번호	건물번호	건물번호V10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물(둘 이상의 건물 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전체)마다 매긴 번호	VARCHAR	10	-	10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37	번호	건물본번	건물본번N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물마다 매긴 번호의 붙임표(-) 앞에 오는 주된 번호	NUMERIC	5	-	99999	99999	-	-
38	번호	건물부번	건물부번N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물마다 매긴 번호의 붙임표(-) 뒤에 오는 가지 번호	NUMERIC	5	-	99999	99999	-	-
39	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V20	금융 기관 등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의나 법인명의 계좌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VARCHAR	20	-	20자리 이내 문자	-	-	-
40	번호	구우편번호	구우편번호C6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과거 지번주소에 매긴 우편번호	CHAR	6	-	6자리 문자	999-999	-	-
41	번호	번호	번호C7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된 길이로 정의한 것	CHAR	7	-	7자리 문자	-	-	-
42	번호	번호	번호C8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된 길이로 정의한 것	CHAR	8	-	8자리 문자	-	-	-
43	번호	번호	번호C9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9	-	9자리 문자	-	-	-
44	번호	번호	번호C10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된 길이로 정의한 것	CHAR	10	-	10자리 문자	-	-	-
45	번호	번호	번호C13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13	-	13자리 문자	-	-	-
46	번호	번호	번호C24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24	-	24자리 문자	-	-	-
47	번호	번호	번호V3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3	-	3자리 이내 문자	-	-	-
48	번호	번호	번호V5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5	-	5자리 이내 문자	-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49	번호	번호	번호V6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6	-	6자리 이내 문자	-	-	-
50	번호	번호	번호V10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10	-	10자리 이내 문자	-	-	-
51	번호	번호	번호V17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17	-	17자리 이내 문자	-	-	-
52	번호	번호	번호V20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20	-	20자리 이내 문자	-	-	-
53	번호	번호	번호V25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25	-	25자리 이내 문자	-	-	-
54	번호	번호	번호V50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50	-	50자리 이내 문자	-	-	-
55	번호	번호	번호V100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나 문자를 고정되지 않은 길이로 정의한 것	VARCHAR	100	-	100자리 이내 문자	-	-	-
56	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C13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 (등기관서별분류번호(4자리)+법인종류별분류번호(2자리)+일련번호(6자리)+오류검색번호(1자리))	CHAR	13	-	13자리 문자	999999-9999999	-	-
57	번호	본번	본번N4	지번주소의 앞부분의 번호로, 단독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 있는 번호	NUMERIC	4	-	9999	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58	번호	부번	부번N4	지번주소에서 세부적인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지번주소 뒤에 줄표를 붙여 쓰는 번호	NUMERIC	4	-	9999	9999	-	-
59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C10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국세청에서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하는 번호	CHAR	10	-	10자리 문자	999-99-99999	-	-
60	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V16	신용 카드에 매긴 번호 1번째-6번째 자리(BIN번호:Bank Identifier Number) 1번째 자리(카드브랜드) 0 : ISO/TC 68 및 기타 산업 1 : 항공 마일리지 및 교통카드 2 : 항공 및 기타 잠재적 산업 할당 3 : 다이너스 클럽, 아멕스, JBC (신용카드 전용) 4 : 비자카드 5 : 마에스트로, 마스타카드, 시러스 6 : 디스커버, 중국은련, 시러스, 디스커버 BC GLOBAL 7 : 석유 및 기타 잠재적 산업 할당 8 : 건강, 전기통신 및 기타 잠재적 산업 할당 9 : 국내 전용 (해외결제 불가) 2번째-6번째 자리(발행기관 식별번호) 7번째-15번째 자리(발행기관의 일련번호) 16번째 자리(검증번호)	VARCHAR	16	-	16자리 이내 문자	-	-	-
61	번호	여권번호	여권번호C9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한 여권에 기재된 번호	CHAR	9	-	9자리 문자	M999999999 S999999999	-	M(복수여권) S(단수여권)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R999999999 G999999999 D999999999 T999999999		R(거주여권) G(관용여권) D(외교관여권) T(여행증명서)
62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C13	국내에 입국일로 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번호	CHAR	13	-	13자리문자	999999-9999999	-	(7번째자리) - 1900년대 남(5),여(6) - 2000년대 남(7),여(8) (12번째자리) - 외국인(9) - 재외국인(8) - 동포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7)
63	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C5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마다 매긴 번호	CHAR	5	-	5자리 문자	99999	-	-
64	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C13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마다 매긴 번호	CHAR	13	-	13자리 문자	9-9999-9999999	-	-
65	번호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번호C12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매긴 번호	CHAR	12	-	12자리 문자	-	-	-
66	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C2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CHAR	2	-	2자리 문자	-	-	-
67	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N10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NUMERIC	10	-	9999999999	9999999999	-	-
68	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N22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NUMERIC	22	-	9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9999	-	-
69	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V50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VARCHAR	50	-	50자리 이내 문자	-	-	-
70	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V16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별로 구분하여 자동차마다 매긴 번호	VARCHAR	16	-	16자리 이내 문자	999가9999	-	-
71	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V19	부과건마다 유일하게부여하는 번호	VARCHAR	19	-	19자리 이내 문자	-	-	-
72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V4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VARCHAR	4	-	4자리 이내 문자	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73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V11	가입된 전화마다 매겨져 있는 일정한 번호 (지역번호(2~3자리) +앞자리전화번호 (3~4자리)+뒷자리전화번호(4자리) or (인터넷전화번호(3자리) +앞자리전화번호 (3~4자리)+뒷자리전화번호(4자리) or (전국대표번호(4자리)+뒷자리전화번호(4자리) or (이동통신번호(3자리)	VARCHAR	11	-	11자리 이내 문자	(9)99-(9)999-9999 or 999-(9)999-9999 or 9999-9999 or 999-(9)999-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앞자리전화번호 (3~4자리)+뒷자리전화번호(4자리)							
74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C13	주민등록을 할 때에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	CHAR	13	-	13자리문자	999999-9999999	-	-
75	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C17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고 차량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보닛 안에 적어 놓은 자동차의 개별 번호	CHAR	17	-	17자리문자	AAAAA99AAA9999	-	-
76	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V20	문자, 도표, 사진 따위의 정지 화면을 화소로 분해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전송하고, 수신 지점에서 원화와 같은 수신 기록을 얻는 통신 기기의 번호	VARCHAR	20	-	20자리이내 문자	-	-	-
77	수량	경도	경도N13,10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세로로 된 것. 한 지점의 경도는 그 지점을 지나는 자오선과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이 이루는 각도	NUMERIC	13	10	999.9999999999	999.9999999999	-	-
78	수량	면적	면적N19,9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NUMERIC	19	9	9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	㎡(제곱미터)	-
79	수량	수	수N2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2	-	99	99	-	-
80	수량	수	수N3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3	-	999	999	-	-
81	수량	수	수N4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4	-	9999	9999	-	-
82	수량	수	수N4,2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4	2	99.99	99.99	-	-
83	수량	수	수N7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	7	-	9999999	999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C						
84	수량	수	수N8,3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8	3	99999.999	99999.999	-	-
85	수량	수	수N10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10	-	9999999999	9,999,999,999	-	-
86	수량	수	수N10,3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10	3	9999999.999	9999999.999	-	-
87	수량	수	수N14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	NUMERIC	14	-	99999999999999	99,999,999,999,999	-	-
88	수량	순서	순서N10	정해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	NUMERIC	10	-	9999999999	9,999,999,999	-	-
89	수량	위도	위도N12,10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가로로 된 것.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	NUMERIC	12	10	99.9999999999	99.9999999999	-	-
90	수량	좌표	좌표N13,10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	NUMERIC	13	10	999.9999999999	999.9999999999	-	-
91	율	율	비율N12,9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나타낸 것.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즉 (비교하는 양)/(기준양)의 값이다.	NUMERIC	12	9	999.999999999	999.999999999	-	-
92	율	율	비율N13,9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나타낸 것.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즉 (비교하는 양)/(기준양)의 값이다.	NUMERIC	13	9	9999.999999999	9999.999999999	-	-
93	율	율	율N5,2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나타낸 것	NUMERIC	5	2	999.99	999.99	-	-
94	율	율	율N6,2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나타낸 것	NUMERIC	6	2	9999.99	9999.99	-	-
95	율	율	율N7,2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NUMERI	7	2	99999.99	99999.99	-	-

번호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공통표준도메인명	공통표준도메인설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데이터소수점길이	저장형식	표현형식	단위	허용값
				나타낸 것	C						
96	율	율	율N12,6	어떤 수량의 다른 수량에 대한 비의 값을 정수와 소수로 나타낸 것	NUMERIC	12	6	999999.999999	999999.999999	-	-
97	코드	여부	여부C1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구분하는 코드	CHAR	1	-	1자리 문자	Y or N	-	Y : 여(예), N : 부(아니요)
98	코드	코드	코드C1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1	-	1자리 문자	-	-	-
99	코드	코드	코드C2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2	-	2자리 문자	-	-	-
100	코드	코드	코드C3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3	-	3자리 문자	-	-	-
101	코드	코드	코드C4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4	-	4자리 문자	-	-	-
102	코드	코드	코드C5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5	-	5자리 문자	-	-	-
103	코드	코드	코드C7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7	-	7자리 문자	-	-	-
104	코드	코드	코드C8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8	-	8자리 문자	-	-	-
105	코드	코드	코드C10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10	-	10자리 문자	-	-	-
106	코드	코드	코드C12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로 고정된 데이터 길이로 표현한 것	CHAR	12	-	12자리 문자	-	-	-

【부록 4】「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 요약 (2024.6.27.)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	주차장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	도시공원정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3	어린이보호구역	반기	경찰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4	공중화장실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5	사회적기업	수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통합정보 시스템 (seis.or.kr)
6	무인민원발급정보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7	전통시장	연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활성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biz.or.kr)
8	문화축제	분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9	관광펜션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0	공연행사정보	분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1	무료급식소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	CCTV	수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3	어린이집	수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14	도서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5	평생학습강좌	분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6	휴양림	반기	산림청	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7	관광안내소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18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반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시스템 (www.rucos.kr) 농촌해양관광누리 집바다여행 (seantour.com)
19	상수도수질검사	월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waternow.go.kr)
20	전기차충전소	연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통합정보누리집 (ev.or.kr)
21	무료와이파이	수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22	공공시설개방정보	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23	금연구역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4	세차장	수시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25	보호수	수시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26	무더위쉼터	연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27	재해위험지구	연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28	법정구역(읍면동) 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29	연속지적도형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30	GIS건물통합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31	건축인허가기본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2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3	건축인허가대지위치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4	건축인허가주택유형	분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5	전국주요상권현황	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36	농수축산물도매시장경락가격	분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온 (agrion.kr)
37	농수축산물조사가격	분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온 (agrion.kr)
38	산정보	수시	산림청	산림청	산림휴양복지 (forest.go.kr)
39	등산로	분기	산림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산림휴양복지 (forest.go.kr)
40	교통사고다발지역	연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koroad.or.kr)
41	도시철도노선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레일포털(data.kric.go.kr)
42	도시철도역사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레일포털(data.kric.go.kr)
43	도시철도운행정보	분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레일포털(data.kric.go.kr)
44	자전거보관소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45	자전거대여소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46	보안등정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47	길관광정보	연간		지방자치단체	
48	지역특화거리	연간		지방자치단체	
49	박물관미술관정보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50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분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nier.go.kr)
51	농기계임대정보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52	마을기업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53	산불위험지역	수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위험예보시스템 (forestfire.nifos.go.kr)
54	민방위대피시설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55	자동심장충격기	분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 (portal.nemc.or.kr, www.e-gen.or.kr)
56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지정정보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57	거주자우선주차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58	견인차량보관소	연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59	자동차검사소	반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60	재활용센터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61	건강증진센터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62	치매센터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63	야영(캠핑)장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64	관광지정보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65	낚시터정보	수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66	가로수길정보	연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67	향토문화유적	연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68	입찰공고	월간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 등
69	계약정보	월간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 등
70	낙찰정보	월간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 등
71	개별공시지가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72	개별주택가격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73	초·중등학교위치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74	초등학교통학구역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75	중학교학교군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76	고등학교학교군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77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78	교육행정구역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79	학교학구도연계정보	반기(3/9)	교육부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mac.kr)
80	보행자전용도로	반기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81	육교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82	도로터널정보	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도로교량및터널 현황정보시스템 (bti.kict.re.kr)
83	휴게소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data.ex.co.kr)
84	렌터카업체정보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85	지반침하정보	수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 (jis.go.kr)
86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87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수시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88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89	종량제봉투가격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90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연간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91	동물보호센터정보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92	로컬푸드인증정보	분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93	시티투어정보	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94	도로안내표지	수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도로표지관리시스템 (korearoadsign.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roadsign.go.kr)
95	도로안전표지	반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96	과속방지턱	수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97	교량	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도로교량및터널 현황정보시스템 (bti.kict.re.kr)
98	버스전용차로정보	연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99	신호등	반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100	일방통행도로	연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101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반기	경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기초자료 입력), 지방자치단체	
102	횡단보도	반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103	보행자우선도로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04	졸음쉼터	연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data.ex.co.kr)
105	자동차정비업체	반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06	스마트가로등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07	안전비상벨위치	수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08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09	푸드트럭허가구역	연간		지방자치단체	
110	아동복지급식정보	반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11	경로우대지정업소	반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12	노인장애인보호	반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구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113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반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14	여성안심택배함	반기		지방자치단체	
115	여성안심지킴이집	반기		지방자치단체	
116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연간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본부)	
117	소방용수시설	연간	소방청	소방청	
118	가변전광표지판(안내전광판)	반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9	대중교통환승센터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20	주정차금지(지정)구역	반기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121	지진옥외대피장소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122	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123	학원 및 교습소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제공포털(open.neis.go.kr)
124	유치원	수시	교육부	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125	버스정류소	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tago.go.kr)
126	모범음식점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localdata.go.kr)
127	일반음식점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localdata.go.kr)
128	집단급식소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기초자료 등록)	(localdata.go.kr)
129	공동주택	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k-apt.go.kr)
130	도서관 도서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종합목록 (nl.go.kr)
131	체육시설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알리미(spoinfo.or.kr/main/main.do)
13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33	약국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34	응급의료기관	연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포털 (e-gen.or.kr)
135	의료기관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36	미용업소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37	사회복지시설	수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w4c.go.kr)
138	지하수표준이용 실태정보	연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gims.go.kr)
139	장애인편의시설	연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w4c.go.kr)
14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41	산업단지및공장정보	연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factoryon.go.kr)
142	지역화폐가맹점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43	자전거도로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44	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145	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 (원재료성식품)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146	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 (가공식품)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47	통합식품영양성분정보 (음식)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48	평생교육시설정보	연간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149	폐교재산기본정보	연간	교육부	교육청	
150	학점은행제학습과목정보	연간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1	대학별입학정원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52	대학공개강의서비스정보(KOCW)	연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3	초중등교과주제별학습자료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	초중등학교기본정보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155	초등학교시간표정보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156	대학및전문대학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57	대학별학과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8	대학별평균등록금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59	대학별장학금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60	대학별학자금대출정보	연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61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허가정보	연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162	행정사사무소	반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63	노동조합	연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164	공인중개사사무소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65	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업소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66	담배소매업소	수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67	공연장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68	영화상영관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69	보건기관	연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g-health.kr)
170	종합여행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71	노래연습장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2	농어촌민박업소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3	소독업소	수시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4	목욕업소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5	안경업소	수시	안경업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6	산후조리원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7	세탁업소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8	치과기공소	수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79	추모공원정보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공기업	
180	마을회관 및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경로당				
181	의약품도매업소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82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수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83	옥외광고업소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84	고압가스업소	수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85	식품제조가공업소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86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187	민방위급수시설	수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88	종량제봉투판매소	분기	환경부	지방공기업	
189	지하철공기질측정정보	연간	환경부	지방공기업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90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정보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91	제설함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92	폐기물처리업소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93	직업소개소	수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94	의료기기수리업소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95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	수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96	출판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97	인쇄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198	종합유원시설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199	일반유원시설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200	기타유원시설업소	수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localdata.go.kr)
201	중학교시간표정보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202	고등학교시간표정보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203	특수학교시간표정보	수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204	토석채취허가업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06	현수막게시대시설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207	배수펌프장	연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208	지역아동센터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209	건축사사무소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10	주유소	연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211	푸드뱅크및푸드마켓	연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12	공공미술및조형물정보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213	전문건설업체정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14	폐의약품수거함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15	인테리어업체	연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216	그늘막쉼터	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217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연번	표준데이터셋 명칭	주기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제공 시스템
218	휴지통	연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8) 법정구역(읍면동)정보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정 행정구역 정보 ※공간정보인 Geometry 타입(shape 포맷)의 별도의 파일로 제공 ※구역정보는 단위 zip파일로 묶어서 제공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갱신주기	분기

□ 상세 정보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
(필수/선택)</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1</td><td>원천도형ID</td><td>필수</td><td>개방DB에서 정의한 법정구역의 도형ID 정보
* 공간정보는 Geometry 타입 (shape포맷) 으로 저장되며, 다수의 파일을 zip형태로 압축하여 제공
* 다운로드한 파일은 ArcGIS 등의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td><td></td><td>N</td><td>208</td></tr>
<tr><td>2</td><td>읍면동코드</td><td>필수</td><td>법정동 구역의 읍면동 코드 정보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읍면동코드 아이디 체계</th></tr>
<tr><td>코드 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⑥⑦⑧</td></tr>
<tr><td rowspan="3">코드 설명</td><td>①②</td><td>숫자</td><td>시도</td></tr>
<tr><td>③④⑤</td><td>숫자</td><td>시군구</td></tr>
<tr><td>⑥⑦⑧</td><td>숫자</td><td>읍면동</td></tr>
</table></td><td></td><td>NNNNNNNN
(8자리숫자)</td><td>41173102</td></tr>
<tr><td>3</td><td>읍면동명</td><td>필수</td><td>법정동 구역의 읍면동 명칭 정보
* 시도, 시군구 명칭은 제외된 읍면동의 명칭</td><td></td><td>text</td><td>관양동</td></tr>
<tr><td>4</td><td>데이터기준일자</td><td>필수</td><td>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 API서비스 제공 시 본 항목 생략 가능</td><td></td><td>YYYY-MM-DD</td><td>2014-10-10</td></tr>
</table>

30) GIS건물통합정보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간(토지)기반의 건물통합정보 ※ 공간정보인 Geometry 타입(shape 포맷)의 별도의 파일로 제공 ※ 구역정보는 단위 zip파일로 묶어서 제공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갱신주기	분기

□ 상세 정보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1</td><td>원천도형ID</td><td>필수</td><td>개방DB에서 정의한 GIS건물통합 공간정보의 도형 ID
* 공간정보는 Geometry 타입 (shape포맷) 으로 저장되며, 다수의 파일을 zip형태로 압축하여 제공
* 다운로드한 파일은 ArcGIS 등의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td><td></td><td>N</td><td>7786890</td></tr>
<tr><td>2</td><td>GIS건물통합식별번호</td><td>필수</td><td>건물공간정보DB 식별자 (층별번호, 호별번호는 '0'으로 통일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GIS건물통합 식별번호 아이디 체계</th></tr>
<tr><td>코드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 + '00000000'</td></tr>
<tr><td rowspan="4">코드설명</td><td>①②③④</td><td>숫자</td><td>건축물생성연도</td></tr>
<tr><td>⑤⑥⑦⑧⑨⑩⑪⑫
⑬⑭⑮⑯⑰⑱⑲⑳</td><td>숫자</td><td>위치정보
(x,y좌표값)</td></tr>
<tr><td>00000</td><td>숫자</td><td>층별번호</td></tr>
<tr><td>000</td><td>숫자</td><td>호별번호</td></tr>
</table></td><td></td><td>NNNNNN
NNNNNN
NNNNNN
NNNNNN
NNNN(28자리숫자)</td><td>19952004360945276952000000000</td></tr>
<tr><td>3</td><td>고유번호</td><td>필수</td><td>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td><td></td><td>NNNNNNN
NNNNNNN
NNNNN
(19자리숫자)</td><td>4117310200108830000</td></tr>
</table>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고유번호 아이디 체계</td></tr>
<tr><td>코드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td></tr>
<tr><td rowspan="5">코드설명</td><td>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d>숫자</td><td>행정구역코드(법정동코드)</td></tr>
<tr><td>⑪</td><td>숫자</td><td>대장구분</td></tr>
<tr><td>⑫⑬⑭⑮</td><td>숫자</td><td>지번본번</td></tr>
<tr><td>⑯⑰⑱⑲</td><td>숫자</td><td>지번부번</td></tr>
</table>
* 행정구역코드 상세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행정구역코드 아이디 체계</td></tr>
<tr><td>코드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td></tr>
<tr><td rowspan="4">코드설명</td><td>①②</td><td>숫자</td><td>시도</td></tr>
<tr><td>③④⑤</td><td>숫자</td><td>시군구</td></tr>
<tr><td>⑥⑦⑧</td><td>숫자</td><td>읍면동</td></tr>
<tr><td>⑨⑩</td><td>숫자</td><td>리</td></tr>
</table>
* 대장구분(특수지구분코드)
<table>
<tr><th>항목</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r>
<tr><td rowspan="5">특수지구분</td><td>1</td><td>일반</td><td>6</td><td>블럭지번(롯트세분)</td></tr>
<tr><td>2</td><td>산</td><td>7</td><td>블럭지번(지구)</td></tr>
<tr><td>3</td><td>가지번</td><td>8</td><td>블럭지번(지구_롯트)</td></tr>
<tr><td>4</td><td>가지번(부번세분)</td><td>9</td><td>기타지번</td></tr>
<tr><td>5</td><td>블럭지번</td><td></td><td></td></tr>
</table>
</td><td></td><td></td><td></td></tr>
<tr><td>4</td><td>법정동코드</td><td>필수</td><td>토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코드(법정동코드) 10자리</td><td></td><td>NNNNNNNNNN
(10자리숫자)</td><td>4117310200</td></tr>
<tr><td>5</td><td>법정동명</td><td>필수</td><td>토지가 소재한 행정구역 명칭
* API서비스 제공 시 본 항목 생략 가능</td><td></td><td>text</td><td>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td></tr>
<tr><td>6</td><td>지번</td><td>필수</td><td>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본번과 지번부번으로 구성
* 지번본번과 지번부번의 숫자가 '0' 으로 시작되는 경우 '0' 은 표시하지 않음
* 지번부번이 '0000' 인경우 부번은 표시하지 않음</td><td></td><td>NNNN-NNNN</td><td>예시1)1454-1
예시2)321</td></tr>
</table>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지번 아이디 체계</td></tr>
<tr><td rowspan="2">코드체계</td><td>1) 부번이 있는경우</td><td colspan="2">①②③④-⑤⑥⑦⑧</td></tr>
<tr><td>2) 부번이 없는경우</td><td colspan="2">①②③④</td></tr>
<tr><td rowspan="2">코드설명</td><td>①②③④</td><td>숫자</td><td>지번본번</td></tr>
<tr><td>⑤⑥⑦⑧</td><td>숫자</td><td>지번부번</td></tr>
</table>
</td><td></td><td></td><td></td></tr>
<tr><td>7</td><td>특수지코드</td><td>필수</td><td>건물이 위치한 해당 필지의 특수지 코드
* API서비스 제공 시 본 항목 생략 가능
* 특수지구분
<table>
<tr><th>항목</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r>
<tr><td rowspan="6">특수지구분</td><td>1</td><td>일반</td><td>6</td><td>블럭지번(롯트세분)</td></tr>
<tr><td>2</td><td>산</td><td>7</td><td>블록지번(지구)</td></tr>
<tr><td>3</td><td>가지번</td><td>8</td><td>블럭지번(지구_롯트)</td></tr>
<tr><td>4</td><td>가지번(부번세분)</td><td>9</td><td>기타지번</td></tr>
<tr><td>5</td><td>블럭지번</td><td></td><td></td></tr>
</table>
</td><td></td><td>N
(1자리숫자)</td><td>1</td></tr>
<tr><td>8</td><td>특수지구분명</td><td>필수</td><td>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특수지구분</td><td>일반/산/가지번/가지번(부번세분)/블럭지번/블럭지번(롯트세분)/블럭지번(지구)/블럭지번(지구_롯트)/기타지번</td><td>text</td><td>일반</td></tr>
<tr><td>9</td><td>건축물용도코드</td><td>필수</td><td>건축물의용도코드
* 5자리 코드 : 1자리 문자/숫자 + 4자리 숫자로 구성
* 행정표준코드사용 : 건축물용도코드</td><td></td><td>Text</td><td>A02001</td></tr>
<tr><td>10</td><td>건축물용도명</td><td>필수</td><td>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구분</td><td></td><td>text</td><td>일반창고</td></tr>
<tr><td>11</td><td>건축물구조</td><td>필수</td><td>건축물의 전유/공유구조 코드 정보</td><td>조적/벽</td><td>NN</td><td>10</td></tr>
</table>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td><td>코드</td><td></td><td>* 행정표준코드 : 건축구조ID
<table>
<tr><th>항목</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h>코드값</th><th>코드정보</th></tr>
<tr><td rowspan="12">구조코드</td><td>10</td><td>조적구조</td><td>32</td><td>경량철골구조</td></tr>
<tr><td>11</td><td>벽돌구조</td><td>33</td><td>강파이프구조</td></tr>
<tr><td>12</td><td>블록구조</td><td>39</td><td>기타강구조</td></tr>
<tr><td>13</td><td>석구조</td><td>40</td><td>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td></tr>
<tr><td>19</td><td>기타조적구조</td><td>41</td><td>철골콘크리트구조</td></tr>
<tr><td>20</td><td>콘크리트구조</td><td>42</td><td>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td></tr>
<tr><td>21</td><td>철근콘크리트구조</td><td>49</td><td>기타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td></tr>
<tr><td>22</td><td>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td><td>50</td><td>목구조</td></tr>
<tr><td>29</td><td>기타콘크리트구조</td><td>51</td><td>일반목구조</td></tr>
<tr><td>30</td><td>철골구조</td><td>52</td><td>통나무구조</td></tr>
<tr><td>31</td><td>일반철골구조</td><td>99</td><td>기타구조</td></tr>
</table></td><td>돌/블록/석/기타조적/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등</td><td></td><td></td></tr>
<tr><td>12</td><td>건축물구조명</td><td>필수</td><td>건축물의 구조 정보</td><td>조적/벽돌/블록/석/기타조적/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등</td><td>text</td><td>조적</td></tr>
<tr><td>13</td><td>건축물면적</td><td>필수</td><td>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td><td></td><td>N.N/㎡</td><td>8538.8</td></tr>
<tr><td>14</td><td>사용승인일자</td><td>필수</td><td>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자</td><td></td><td>YYYY-MM-DD</td><td>2015-07-07</td></tr>
<tr><td>15</td><td>연면적</td><td>필수</td><td>건축물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td><td></td><td>N.N/㎡</td><td>12.56</td></tr>
<tr><td>16</td><td>대지면적</td><td>필수</td><td>건축물을 세울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td><td></td><td>N.N/㎡</td><td>323</td></tr>
<tr><td>17</td><td>높이</td><td>필수</td><td>건물의 높이</td><td></td><td>N/m</td><td>13</td></tr>
<tr><td>18</td><td>건폐율</td><td>필수</td><td>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td><td></td><td>N.N/%</td><td>34.5</td></tr>
<tr><td>19</td><td>용적율</td><td>필수</td><td>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td><td></td><td>N.N/%</td><td>67.1</td></tr>
<tr><td>20</td><td>건축물ID</td><td>필수</td><td>건축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td><td></td><td>NNNNNNNNN</td><td>100204361</td></tr>
<tr><td>21</td><td>위반건축물</td><td>필수</td><td>건축물의 위반 건축물 여부</td><td>Y/N</td><td>Y:위반건축</td><td>N</td></tr>
</table>

<table>
<tr><th>NO</th><th>항목명</th><th>구분</th><th>설명</th><th>허용값</th><th>표현형식/단위</th><th>예시</th></tr>
<tr><td></td><td>여부</td><td></td><td></td><td></td><td>물
N:정상건축물</td><td></td></tr>
<tr><td>22</td><td>참조체계연계키</td><td>필수</td><td>공간정보참조체계에서 부여하는 공간객체등록번호
*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함
-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분류체계
- 일련번호 :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것으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
- 오류 점검수 : 공간정보 참조체계 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위함
* 참조법률 :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등에관한 규칙」제6조
<table><tr><th>구분</th><th colspan="3">공간정보 참조체계(UFID) 아이디 체계</th></tr><tr><td>코드체계</td><td colspan="3">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td></tr><tr><td rowspan="4">코드설명</td><td>①</td><td>문자</td><td rowspan="2">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td></tr><tr><td>①②③④⑤⑥⑦⑧</td><td>숫자</td></tr><tr><td>⑨⑩⑪⑫⑬⑭⑮⑯</td><td>숫자+문자</td><td>일련번호</td></tr><tr><td>⑰</td><td>숫자</td><td>오류점검수</td></tr></table>
*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 (첫번째 문자)
: 교통(A), 건물(B), 시설(C), 식생(D), 수계(E), 지형(F), 경계(G), 기타(H)</td><td></td><td>text</td><td>B00100000000TF9Y0</td></tr>
<tr><td>23</td><td>데이터기준일자</td><td>필수</td><td>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 API서비스 제공 시 본 항목 생략 가능</td><td></td><td>YYYY-MM-DD</td><td>2014-10-10</td></tr>
</table>

49) 박물관미술관정보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미술관 정보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해당없음
갱신주기	연간

□ 상세 정보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1	시설명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이름		Tex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	박물관미술관 구분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국립/공립/사립/대학	Text	*국립*
3	소재지도로명주소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치한 상세 도로명주소 * 시군구명 모두 입력 * 도로명주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지번주소를 반드시 등록, 도로명주소는 공백 처리 (이 경우 소재지도로명주소는 필수 예외)		Text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4	소재지지번주소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치한 상세 지번주소 * 시군구명 모두 입력 * 관리사무소 등 대표장소의 지번주소를 입력		Text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5	위도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위도좌표계 사용 * 주출입구 위도좌표값 입력		NN.NNNNNN (소수점이하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 허용)	*37.518008*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6	경도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경도좌표계 사용 * 주출입구 경도좌표값 입력		NNN.NNNNNN (소수점이하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 허용)	*127.114457*
7	운영기관전화번호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전화번호		NNN-NNNN-NNNN	*02-3703-9200*
8	운영기관명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		Tex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9	운영홈페이지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주소(URL)		Text	*http://www.much.go.kr/*
10	편의시설정보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정보 * 복수 표기시 '+' 구분자를 삽입		Text	*문화상품점+황토마루카페+물품보관소+응급대기실+수유실+자전거보관대*
11	평일관람시작시각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평일 관람 시작 시각 * 24시간 운영 또는 미 운영 시 '00:00'으로 표기		HH24:MI	*09:00*
12	평일관람종료시각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평일 관람 종료 시각 * 24시간 운영 시 '23:59'로 표기 * 미 운영 시 '00:00'으로 표기		HH24:MI	*18:00*
13	공휴일관람시작시각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공휴일 관람 시작 시각 * 24시간 운영 또는 미 운영 시 '00:00'으로 표기		HH24:MI	*09:00*
14	공휴일관람종료시각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공휴일 관람 종료 시각 * 24시간 운영 시 '23:59'로 표기 * 미 운영 시 '00:00'으로 표기		HH24:MI	*18:00*
15	휴관정보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휴관에 관한 정보 * 복수 표기시 '+' 구분자를 삽입		Text	*예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은 개관하고 그 다음 첫번째 평일에 휴관) 예2) 월요일+금요일*
16	어른관람료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어른 관람 비용		N/원	*700*
17	청소년관람료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청소년 관람 비용		N/원	*500*
18	어린이관람료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어린이 관람 비용		N/원	*0*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19	관람료기타정보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에 대한 기타 정보 * 복수 표기시 '+' 구분자를 삽입		Text	*예시1)종로구민은 50%감면 예시2)무료(미취학 아동+65세 이상 어르신+국가유공자+장애인 등)*
20	박물관미술관소개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간략한 소개 정보		Text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한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21	교통안내정보	선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방문을 위한 교통 정보 * 복수 표기시 '+' 구분자를 삽입		Text	*버스:103,109+지하철:1호선 종각역 1번출구(약900m)*
22	관리기관전화번호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 전화번호		NNN-NNNN-NNNN	*02-1234-5678*
23	관리기관명	필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명 *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전체 기관명 입력 예)서울시 종로구청(X), 서울특별시 종로구청(O)		Text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24	데이터기준일자	필수	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YYYY-MM-DD	*2016-06-13*

67) 향토문화유적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향토문화유적 정보 ※국가 및 광역시도 등에서 지정한 국가유산 제외
관련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해당없음
갱신주기	연간

□ 상세 정보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1	향토문화유적명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이름		Text	*조견사우*
2	문화유적지정번호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번호		Text	*공주시 문화유적 유형 제8호*
3	향토문화유적구분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구분	유형문화유적/무형문화유적/기념물/민속자료	Text	*유형문화유적*
4	향토문화유적종류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구분에 따른 종류 * 1)유형문화유적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무형문화유적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3)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 또는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4)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Text	*건조물*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5	소재지도로명주소	선택	향토문화유적의 위치에 대한 상세 도로명주소 * 시군구명 모두 입력 * 도로명주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지번주소를 반드시 등록, 도로명주소는 공백 처리		Text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적동길 20-13*
6	소재지지번주소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위치에 대한 상세 지번주소 * 시군구명 모두 입력 * 무형국가유산, 동산국가유산(서적, 문서, 회화 등)은 대표 건물·유적지의 지번주소 입력 가능		Text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679*
7	위도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위도좌표계 사용 * 향토문화유적 중앙 지점의 위도좌표값 입력 * **주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의 위도좌표값** * 무형국가유산, 동산국가유산(서적, 문서, 회화 등)은 대표 건물·유적지의 좌표 입력 가능		NN.NNNNNN (소수점이하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 허용)	*37.518008*
8	경도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경도좌표계 사용 * 향토문화유적 중앙 지점의 경도좌표값 입력 * **주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의 경도좌표값** * 무형국가유산, 동산국가유산(서적, 문서, 회화 등)은 대표 건물·유적지의 좌표 입력 가능		NNN.NNNNNN (소수점이하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 허용)	*127.114457*
9	지정일자	필수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일자		YYYY-MM-DD	*1997-06-05*
10	소유주체구분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주체 구분	국유/사유	Text	*사유*
11	소유자명	선택	향토문화유적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의 이름		Text	*조용필*
12	규모	선택	향토문화유적의 규모		Text	*1동*
13	조성시대	선택	향토문화유적이 조성된 시기		Text	*조선시대*
14	이미지정보	선택	향토문화유적의 사진 등 이미지 정보 * 관련 홈페이지의 이미지 링크 주소 등		Text	*http://tour.gongju.go.kr/Upl/kr/culture_assets//60777433958401503*

NO	항목명	구분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15	향토문화유적소개	필수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		Text	*조견을 제향한 사당은 양주 지역에 있었으나, 후손들이 공주로 이거하면서 사당을 함께 이전한 것으로 전해짐. 당시 우성면 보흥리 지역에서 평양조씨의 위상과 권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됨*
16	관리기관전화번호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관리•감독 기관 전화번호		NNN-NNNN-NNNN	*031-2133-7583*
17	관리기관명	필수	향토문화유적의 관리•감독 기관명 *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전체 기관명 입력 예) 시울시종로구청(X), 서울특별시 종로구청(O)		Text	*충청남도 공주시청*
18	데이터기준일자	필수	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YYYY-MM-DD	*2016-10-01*